

입법평가 연구 09-16-□□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연구

A Study on the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for
Industrial Location Controls in Nature Conservation Zone

연구자 : 한상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Han, Sang-woon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Cha, Hyun-Sook

2009. 8. 31.

국문 요약

이 연구는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그 대안 및 권고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 규제체계 현황, 둘째,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평가를 통한 규범론적·법사회학적·비교법적 분석, 셋째,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개선을 위한 대안 및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입지관리 개선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권역별 입지규제의 재정비 방안,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확대시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의 연계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체계 개선을 위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절차, 그리고 허가심사절차의 개선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 셋째, 폐수시설 배출기준 강화 방안으로서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및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에 BAT 도입을 위한 각각의 법제 정비 방안, 넷째,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과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체계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입법평가의 결과와 대안을 제시하였다.

※ 키워드 :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입지규제, 중첩규제, 입법평가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some alternative plan and recommendation through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bout the industrial location controls of Nature Conservation Zone as follows: (1) As an object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Nature Conservation Zon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related regulation system (2) The analysis of Normative science · sociology of law · comparative law through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to improve regulation system of Nature Conservation Zone, (3) some alternative plan and recommendation to improve regulation system of Nature Conservation Zone.

Be more specific, First, Re-development of location controls by zones, the legislation improvement plan for activation of plan-location and individual-location accumulation, for enlarged enforcement of the Han river watershed total water pollutant control system, for connection of total water pollutant control system and total waste water discharge control system. Second, As a improvement plan for waste water facilities permit system, the legislation improvement plan of the public meeting and permit procedure. Third, As an enhancement plan of emission standards of waste water facilities, plan of improvement an industrial waste water management system and zero pollutants system. Forth, the legislation improvement plan for the legislation improvement of the specific quality of water noxious substance. Lastly, The meanings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Nature Conservation Zone and as a result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some alternative plan and recommendation.

※ Key Words : Nature Conservation Zone, water protective Zone in Capital Region, Industrial location controls, Reiterated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입법평가서

입법평가서	
1. 입법평가의 대상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입지규제 ○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체계 ○ 폐수시설 배출기준
2. 입법평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 한상운 ○ 공동연구자: 차현숙
3. 입법평가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에 의해 지정된 권역으로써 수도권 도시민의 상수원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 주요 부처로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있으며 현재 다수의 관련법이 제정·시행중에 있음 ○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와 관련된 수많은 규제입법은 입법이 의도한 효과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입법자가 당초에 예상했지 못했던 결과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의 선호를 반영하거나 사회발전을 이끄는 입법보다는 특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음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중복 규제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 및 기업체 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장입지규제는 토지이용이 고도로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상수원 관리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민원과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

입법평가서		
	<p>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공장 신·증설 제한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수도권 공장규모의 영세화 초래, 계획입지의 공급부족에 따른 개별입지 공장 난립,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소규모 개발 난립, 규제의 존재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 조장, 과밀부담금의 획일적 부과에 따른 수도권 기업입지비용 증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의 분석을 통해 자연보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효과적·합리적 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전반적으로 문제점 및 그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입법평가의 방법	규범적 평가	<p>현행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들이 첫째,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이전 규정 보다 현재 규정이 목표를 보다 잘 달성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목표개선을 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수용성 측면에서 현행 규정이 종전 규정 보다 더 폭넓게, 계속해서 수용되고 있는지, 셋째, 실용성 측면에서 현행 규정이 종전 규정 보다 더 실용적인지 여부 및 현행 규정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실용성이 강화되는지, 넷째, 관련 규제입법의 체계분석을 통하여 관련 입법간의 모순 및 중복 규제 가능성 등에 관하여 분석</p>
	법사회학적 평가	<p>자연보전권역의 규제입법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기존에 환경부에서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전문가 등의 설문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요성 인식 정도, 지정 및 지정기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유지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입지규제 거리(취수장으로부터 7km)의 적정성여부 등을 분석함</p>

입법평가서		
	비교법적 평가	자연보전권역과 같은 상수원보호를 위한 선진외국의 법제도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통하여 현행 한국의 상수원보호제도를 평가하고 분석함
5. 입법평가의 절차	평가기간	2009. 4. 1.-8. 31.(총 5개월)
	워크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자들간의 의견조율 및 연구진 워크샵(총 3회 실시) ○ 최종심: 2009. 8. 27.
6. 대안 및 한계	대안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의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입지규제 개선 ○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 강화 ○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시행 ○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 연계 ○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체계 개선 ○ 폐수시설 배출기준 강화 ○ 권고: 규범적, 법사회적, 비교법적 분석결과 입지규제 정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총량제, 배출규제 개선 등 수질관리정책의 선진화가 요구됨
		권역별 입지규제 개선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한 기업 활동의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필요한 경우 중첩규제(목적이 다른 중첩규제에 한함)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보전하되 규제의 허용은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한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 강화

입법평가서	
	<p>산업입지정책인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규제의 일관성, 관리의 용이성,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개별입지 집단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계획입지의 선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 제공과 더불어 사회환경적·경제적·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는 등 관련 정책의 보완이 요구됨</p>
	<p>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시행</p>
	<p>자연보전권역내 수질의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행 입지규제와 농도규제 중심의 규제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지나친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제약하고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폐수 등 오염물질의 농도중심 규제는 기업에서 배출농도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체별 오염부하량(=농도(C) x 폐수량(Q))의 총량이 과다하여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일부 수계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도 확대 시행해야할 필요성이 있음</p>
	<p>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 연계</p>
	<p>폐수배출총량은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법의 사업장 오염부하량 할당에 이미 제도화 되어 있다. 한강 지역은 폐수배출총량제의 제도화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법률의 제정보다는 폐수배출총량제의 성격상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동법 제4조 제</p>

입법평가서	
	2항에 필요한 경우 폐수배출량을 확인하여 총 폐수배출량을 할당받아 이를 오염총량과 같이 관리하도록 규정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체계 개선
	주민공람 및 의견절차의 법제를 정비하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 일반적인 허가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은 10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공람 및 의견제출이 요구되는 사업장의 경우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소 2~3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요구됨
	폐수시설 배출기준 강화
	지자체·유역환경청은 폐수를 직접방류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폐수의 특성 및 배출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한도를 정하여 5년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고 간접방류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과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와 더불어 자연보전권역에 BAT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요구됨
	한계

입법평가서

색지삽입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21
I.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21
II. 입법평가의 대상	23
III.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26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31
I.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현황	31
1. 개 요	31
2.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36
II. 상수원관리 규제체계 현황	41
1. 상수원보호구역 직접 규정	42
2. 기타 관련 규정	51
III.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체계 현황	5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56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58

제 3 장 입법평가	59
I. 규범론적 평가	59
1. 입법목적의 달성도	59
2. 수용성	60
3. 실효성	60
4. 입법체계성 분석	62
II. 법사회학적 평가	63
1. 상수원보호구역의 인식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4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6
3. 공장입지규제에 관한 사항	69
4. 소결론	69
III. 비교법적 평가	70
1. 미 국	70
2. 프랑스	72
3. 영 국	73
4. 독 일	75
5. 일 본	75
6. 시사점	77
제 4 장 대안 및 권고	81
I. 대안 : 개별 규제법령 개선안	81
1. 입지관리 제도 개선안	81
2.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체계 개선안	94
3. 폐수시설 배출기준 관련 개선안	99

4.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개선안	106
Ⅱ. 권 고	108
참 고 문 헌	111

【부 록】

부록 1 관련법조항	115
부록 2 관련입법조치	143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143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선의원 대표발의)	147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의원 대표발의)	154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의원 대표발의)	158

제 1 장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개요

I.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제는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에 관련된 규제 및 환경 관련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환경규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가 환경관련 법규에 따라 환경보호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 기업, 민간단체 등 행정객체를 규제하는 모든 법적, 정책적, 행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¹⁾ 토지이용의 확정 전에 환경보전적인 배려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가하여 지는 규제를 사전적 규제라 하며 (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토지이용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환경보전적 목적으로 가하여지는 규제를 사후적 규제(특별대책지역 등)라 한다.²⁾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는 사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사전적 규제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많은 저항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장설립은 공장의 입지유형에 따라 계획 입지와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으로 나눌 수 있다.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토지에 관한 규제를 더 많이 적용받는 것은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 경우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에 의해 지정된 권역으로써 수도권 도시민의 상수원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 주요 부처로는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있으며 현재 다수의 관련법이 제정·시행중에 있다. 환경

1) 조대현,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 국회 법제실, 2007, 4-5쪽.

2) 전병성,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현황아 개선방향, 환경부, 저스티스 통권 제74호, 2003, 7쪽.

부의 경우 수질보호를 포함한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을 담당하며 국토해양부의 경우 산업시설 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관련법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한강상수원수질보호및주민지원에관한법, 수도법이 있으며 행정주체는 각 법에서 구역, 권역 및 제도 등의 시행을 통해 상수원 및 자연보전을 위해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와 관련된 수많은 규제입법은 입법이 의도한 효과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입법자가 당초에 예상했지 못했던 결과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국민의 선호를 반영하거나 사회발전을 이끄는 입법보다는 특수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국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법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의 실패 또는 위기현상을 극복하고 입법 환경의 변화에 상응하는 입법 활동을 위해서는 입법이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현행 법령이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지 또는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분석하여 법령의 개정·폐지 등이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입법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³⁾

이와 같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중복 규제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 및 기업체 관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규제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공장입지규제는 토지이용이 고도로 이용되는 우리나라의 상수원관리에 큰 기여를 하였으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민원과 발전된 환경기술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활동 및 주민생활을

3) 김대희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2008, 20-21쪽.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⁴⁾ 이를 요약하면 공장 신·증설 제한에 따른 기업경쟁력 약화, 수도권 공장규모의 영세화 초래, 계획입지의 공급부족에 따른 개별입지 공장 난립,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소규모 개발 난립, 규제의 존폐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 조장, 과밀부담금의 획일적 부과에 따른 서울의 기업입지 비용 증대 등이다.⁵⁾

대표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6만m²이하), 산집법에서의 첨단공장 신증설(1천m²이하),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특대고시에서 특별대책지역에서의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입지금지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본 입법평가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의 분석을 통해 자연보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효과적·합리적 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에 대한 입법평가와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입법평가의 대상

일반적으로 공장설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입지를 선정하고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제입법의 범위는 대단히 복잡·다양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 규제로 입법평가의 대상을 한정하고자 한다. 즉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

4) 최근 환경부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와 보호구역 관리기관인 유역환경청, 그리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금지행위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재산권제한 및 산업활동의 제약에 대하여 다양한 현실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방안, 2008, 39-41쪽 참조.

5) 이동우, 수도권 규제가 인구·산업의 공간적 재배치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국토연구원, 2008 참조.

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동법 제6조)으로서 자연보전권역의 권역별 행위제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가 직접적 평가대상인 입법이 된다. 즉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 용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또한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자연보전구역의 지정목적에 달성하기 행위규제는 지역적으로 볼 때 수도권정비계획법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도 중첩 적용되므로 이들 관련입법도 입법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정책기본법상 상수원수질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규제조항(동법 제22조)⁶⁾이 이에 포함되는데 공장과 관련된 규제 내용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금지 및 1일 500m³ 이상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기타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억제 등이 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의 업무 매뉴얼(2006. 12)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입지관련 중점 검토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내 수질오염을 초해할 수 있는 행위를 수도법 제7조 3항과 4항에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에서는 공장, 숙박시설, 양식장에 대한 입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건축물도 100m³이하의 영농시설과 공공시설의입지만을 허용하고

6)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수도권 및 중부권 2,000여만 주민의 식수 공급원인 팔당·대청호 광역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1990년 7월 경기 3시·4군, 43개 읍·면과 대전 동구 및 충북 3군,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다.

있고, 가옥의 신축·이축·증축을 불허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따라 동 시행령 31조 4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상수원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받도록 하여 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동법 제33조 5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1990년 4월부터 팔당호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 주변지역을 배출시설 설치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가 금지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권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되어 용도지역별 토지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제2006-199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18호)에 의하여 개별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수계 상류방향으로 광역상수도는 유하거리 20km이내인 지역, 지방상수도는 10km이내인 지역에 지정승인을 받을 수 없다.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수장으로부터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이내인 지역과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 이내인 지역에 개별공장의 지정승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1일평균 폐수배출량이 500입방미터이상인 사업장,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업종, 산업용 화학물질제조시설, 기타 화학제품제조시설, 염색시설, 금속제조시설, 석유정제시설, 종이제조시설, 가죽 및 모피제조시설(가죽 및 모

피를 이용하는 가공시설은 제외)은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받을 수 없다.

즉 입법평가의 대상은 위에서 언급한 관련법조항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입지규제조항이다.

<표 1-1> 팔당 상수원 보호 토지이용규제 법적 근거 및 관리수단⁷⁾

구 분	상수원 보호구역 직접규정	상수원보호 간접 규정						
		환경법제			토지이용법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 지역	배출시설 허가제한 지역	수변구역	용도지역	자연보전 지역	개발제한 구역	공장입지 제한
법 률 근 거	수도법	환경정책 기본법	수질환경 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법	국토의계 획및이용 관리법	수도권정 비계획법	국토의계 획및이용 관리법/개 발제한구 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산업입지 및개발법
관 리 수 단	수질오염 유해행위 의 금지와 제한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 제한	산업폐수 시설설치 허가제한	상수원 일정거리 이내 토지 이용규제	자연환경 보전지역 에 대한 행위제한	자연보전 권역에 대한 시설제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20km 이내 지역에 개별공장 입지제한

Ⅲ. 입법평가의 범위 및 방법

‘입법평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개념적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와 입법평가의 대상과 관련된 범위설정의 문제로 구분할 수

7)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개선방안, 2008, 6쪽 <표2-1> 수정.

있으며 후자는 입법평가의 대상에서 전술한 바와 같다. 문제는 입법평가의 개념적 범주에 관한 것이다. 입법평가의 개념, 즉 평가대상인 ‘입법’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입법’의 개념설정은 그 ‘평가’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전체로서 ‘입법평가’의 개념 및 성격과 밀접히 관련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평가대상으로서의 ‘입법’의 개념설정은 최광의,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최광의 개념으로서의 ‘입법’은 법규제정과 관련한 모든 부분, 즉 법규자체 뿐만 아니라 입법주체로서의 의회 및 정부 등 입법자, ‘입법과정’, 그리고 법규와 관련된 제반 사회단체 및 이익단체까지 포함한다. 둘째, 광의 개념으로서의 ‘입법’은 법규자체 및 법규제정과 관련된 입법자 및 입법과정에 한정하게 된다. 셋째, 협의의 ‘입법’은 법규자체에 대한 평가와 입법과정에 한정하게 되며, 넷째, 최협의의 ‘입법’은 ‘법규 자체’에 한정한다.⁸⁾

생각건대 헌법 제40조는 국회입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입법’의 개념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별되어 논의되지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국회입법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으로 국회만이 제정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75조의 위임입법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포함한 일반적·추상적 법규범, 즉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 입법도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규제정 및 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법규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입법과정의 합리성·적정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규자체

8)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5, 19쪽; 홍준형·최은진·김난영, 입법평가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3쪽; 강현철, 평가방법론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센터, 입법동향과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년 여름호, 56쪽; 김대회의,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2008, 17-18쪽;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2, 20쪽;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2008, 130쪽 이하 참조.

는 물론이고, 입법자 및 입법과정까지 그 평가의 대상인 입법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법규와 관련된 제반 사회단체 및 이익단체까지 포함하여 그 대상으로 삼기에는 아직까지 평가·분석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고려할 때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 ‘입법’은 광의의 ‘입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와 달리 입법평가는 3단계로 구분하여 수행된다.⁹⁾ 첫 번째는 사전적 평가단계로서 이것은 입법초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입법대안의 개발 및 대안간의 비교 형량을 통하여 그 실시 여부를 검토하거나 복수대안 중에서 비교 평가를 통하여 최적의 규율대안을 선택하는 사전적 평가이다. 두 번째 단계는 병행적 평가단계로서 입법초안이 완성된 후에 그 초안을 법형식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평가이며, 법령안 내용이 상위법이나 다른 법령과 모순이나 충돌이 없는지 또는 현실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는 한편, 법령안 내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여 법령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 아니면 보완이나 변경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법령안을 법형식적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을 한다.¹⁰⁾ 마지막 단계로서 사후적 평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 당초 제정당시 법률에 기대하였던 효력과 실제 나타난 결과를 비교하여 입법목표와 현실이 부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회고적 평가로서, 현행 법령에 대한 평가이다.

본 입법평가연구는 자연보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과 관련된 규제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문제점 도출을 통해 자연보전권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입법평가연구는 단계별로 볼 때 사후평가단계의 유형에 해당된다.

9) 이하 박영도, 앞의 책, 129-131쪽; 최윤철·홍완식, 앞의 논문, 36쪽; 김대희외, 앞의 책, 30-31쪽 참조.

10) 박영도, 앞의 책, 166쪽.

일반적으로 사후적 평가는 법령의 시행 후 상당한 시점이나 적용경험이 존재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중점 평가기준으로서 입법목적의 달성도 및 입법개선의 필요성 여부이지만 이외에도 실효성, 비용 또는 비용편익, 수용성, 부수적 효과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사후평가의 방법이 당위-현재 비교방법, 이전-이후 비교방법, 사후적 분석방법 및 사례연구방법인지에 따라 평가기준에 대한 질문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다.¹¹⁾ 또한 입법평가의 기준은 평가대상에 관한 주된 관점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즉 규범적 관점, 법경제학적 관점, 법사회학적 관점, 비교법적 관점 등이 구체적인 입법평가의 분석틀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전자의 주요 평가기준 가운데 비용 또는 비용편익 기준은 법경제학적 관점에 따른 입법평가기준의 핵심요소이고, 이외의 입법목적의 달성도, 수용성, 실효성, 입법체계성 기준은 규범론적 관점에 따른 핵심적 평가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규범론적, 법경제학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등의 분석틀은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 평가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증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평가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법경제학적 관점을 제외하고 규범론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관점에 따른 입법평가를 수행한다. 즉 법경제학적 관점에 따른 평가기준으로서의 비용 또는 비용편익을 제외하고,¹²⁾ 규범론적 분석에 따른 입법목적의 달성도 및 입법개선의 필요성, 그리고 실효성 및 수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

11) 당위-현재 비교방법은 법령이 달성하려는 당위 가치와 실무에서 조사된 법령의 실제 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고, 이전-이후 비교방법은 법령 시행 이전의 가치와 법령 시행 이후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방법이며, 사후적 분석방법은 법령 시행 이후의 시간적 순서에 따른 분석방법을 말하고, 사례연구방법은 법령상 사례와 다른 법령이나 다른 국가 등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에 관해서는 박영도, 앞의 책, 196-197쪽; 김대희외, 앞의 책, 40-41쪽 참조.

12) 그 이유는 비사용가치로서의 상수원 등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가치추정을 위한 통계 및 사례축적이 미흡하며 아직은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면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규제들이 첫째, 목표달성도 측면에서 이전 규정 보다 현재 규정이 목표를 보다 잘 달성하고 있으면 지속적으로 목표개선을 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수용성 측면에서 현행 규정이 종전 규정 보다 더 폭넓게, 계속해서 수용되고 있는지, 셋째, 실용성 측면에서 현행 규정이 종전 규정 보다 더 실용적인지 여부 및 현행 규정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실용성이 강화되는지, 넷째, 관련 규제입법의 체계분석을 통하여 관련 입법간의 모순 및 중복 규제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법사회학적인 측면에서의 설문 및 통계자료분석, 그리고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외국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평가방법을 설정하여 그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이하에서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제2장에서는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 규제체계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은 본연구의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평가를 위한 규범론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평가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개선을 위한 대안 및 권고를 제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입지관리 개선 방안으로 권역별 입지규제의 재정비 방안,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확대시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의 연계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폐수배출 시설 인·허가체계 개선 방안으로 주민공람 및 의견절차의 법제 정비 방안, 허가심사에 관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폐수시설 배출기준 강화 방안으로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자연보전권역에 BAT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의 결론부분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체계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입법평가의 결과와 대안을 다시 요약정리한다.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I.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현황

1. 개 요

수도권은 인구 및 경제, 행정 기능이 집중된 곳으로서 서울,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일컫는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주거지 부족과 지역개발 측면에서 지방과 불균형을 유발시켰고 인구 및 산업, 경제의 과밀화로 인한 환경오염도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수도권을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규제정책을 수립·시행해오고 있다.

(1) 수도권의 권역 현황

정부는 수도권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도권을 세 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즉 과밀화 방지 및 도시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과밀억제권역, 이전기능 수용 및 자족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성장관리권역, 한강수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가. 일반현황

2007년 기준 수도권 권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면적은 총 11,745 km², 인구는 24,472천명이며 행정구역상 1개 특별시와 1개 광역시 및 1개 도, 66개 기초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남양주·시흥(일부)을 말하며, 성장관리권역은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인천·남양주·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시흥·용인·안성(일부)을 말한다. 또한 자연보전권역은 이천, 광주, 가평, 양평, 여주·남양주·용인·안성(일부)을 말한다.

수도권 권역구분 현황도 및 각 권역별 면적, 인구, 행정구역, 정비전략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2-1> 수도권 권역구분 현황도



<표 2-1> 수도권 권역 현황

구 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 적	11,745km ² (100%)	2,042km ² (17.4%)	5,865km ² (49.9%)	3,838km ² (32.7%)
인 구	24,472천명 (100%)	19,346천명 (79.1%)	4,144천명 (16.9%)	982천명 (4.0%)

구 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행정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특별시 • 1광역시 • 1도 • 66기초지자체 - 27시 - 6군 - 33자치구 	서울,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의정부 인천·남양 주·시흥 (일부) (총 16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김포, 화성,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인천·남양주 ·시흥·용인 ·안성(일부) (총 14시, 1군)	이천, 광주, 가평, 양평, 여주·남양주 ·용인·안성 (일부) (총 5시, 3군)
정비 전략	인구·산업의 적정배치 유도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사이트(<http://www.mltm.go.kr/intro.do>)

전술한 바와 같이 수도권에는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는 48.9%('07년 기준),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수는 5.9%('06년 기준), 서비스업 사업체수는 48.3%('06년 기준)이다. 부문별 수도권 집중도는 다음과 같다.

<표 2-2> 수도권 집중도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집중도(%)		
						(단위)	(A)	(B)
국토면적 (07)	km ²	99,720	11,745	605	1,007	10,132	11.8	0.6
인구 (07)	천명	50,034	24,472	10,442	2,710	11,340	48.9	20.9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구 분		전 국	수도권	서 울	인 천	경 기	집중도(%)	
	(단위)	(A)	(B)	(C)			B/A	C/A
지역내 총생산 (07)	(10억원)	856,192	408,592	193,776	40,607	174,209	47.7	22.6
제조업 (06) (5인이상)	사업체 수	119,181	67,799	19,667	9,391	38,741	56.9	16.5
	종업원 (천명)	2,910	1,350	258	197	895	46.4	8.9
	제조업 생산 (10억)	912,763	306,275	39,625	51,373	215,277	33.6	4.3
서비스업 (06)	사업체 수	765,817	370,015	180,556	34,958	154,501	48.3	23.6
	종업원 (천명)	3,546	2,003	1,192	143	668	56.5	33.6
대학교 (05)	학교수 (개)	175	68	38	4	26	38.8	21.7
	학생수 (천명)	1,920	726	455	41	230	37.8	23.7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사이트(<http://www.mltm.go.kr/intro.do>)

나. 인구현황

수도권의 인구는 1996년 21,065천명에서 2007년 24,472천명으로 11년간 약 3,407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전국대비 수도권 인구비율을 살펴보면 1996년 45.4%에서 2007년 48.9%로 증가한 것으로 3.5%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인구증가의 요인은 사회적 증가보다 주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증가로 조사되었다.

<표 2-3> 수도권 연도별 인구 변화

(단위 : 천명)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전 국	46,434	46,885	47,174	47,543	47,977	48,289	48,518	48,824	49,053	49,268	49,624	50,034
수도권	21,065	21,365	21,532	21,828	22,216	22,525	22,877	23,240	23,527	23,782	24,127	24,472
비 율 (%)	45.4	45.6	45.6	45.9	46.3	46.6	47.2	47.6	48.0	48.3	48.6	48.9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사이트(<http://www.mltm.go.kr/intro.do>)

다. 산업현황

전국 제조업체수는 2006년 341천개소였으며 이중 수도권에는 177천개소, 비수도권에는 164천개소가 존재하였으며 99년까지는 비수도권의 업체수가 더 많았으나 2000년부터 수도권의 제조업체수가 비수도권의 업체수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조업체 종업원수는 2006년 기준 수도권은 1,669천명, 비수도권은 1,767천명으로 비수도권의 종업원수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4> 제조업체 수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천개, 천명)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전국 업체수	304	279	297	313	331	334	327	328	340	341
수도권 비수도권	149 155	136 143	148 150	159 154	170 161	171 163	169 158	170 159	177 163	177 164
전국 종사자수	3,312	2,987	3,170	3,333	3,416	3,393	3,411	3,417	3,451	3,435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수도권	1,628	1,467	1,569	1,650	1,718	1,687	1,695	1,671	1,695	1,669
비수도권	1,684	1,520	1,601	1,683	1,98	1,706	1,716	1,746	1,756	1,767

※ 자료출처 : 국토해양부 사이트(<http://www.mltm.go.kr/intro.do>)

한편, 2007년말 기준 우리나라에 산업단지 수는 총 646개소이며 그 중 수도권에 89개소가 존재하며 개발면적은 86.5km²로 비수도권 개발 면적 대비 18.3%에 그쳤다.

<표 2-5> 시도별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현황

(2007년말 기준)

구 분	단지수(개소, %)		지정면적(km ² , %)		개발면적(km ² , %)	
	개소	%	면적	%	면적	%
계	646	100.0	1,199.5	100.0	472.4	100.0
수도권	89	13.8	302.5	25.2	86.5	18.3
서울	2	0.3	2.1	0.2	1.8	0.4
인천	9	1.4	18.6	1.5	11.2	2.4
경기	78	12.1	181.7	23.5	73.6	15.5
비수도권	557	86.2	897.0	74.8	385.9	81.7

※ 자료출처 : 산업입지정보센터(<http://industryland.or.kr>)

2. 자연보전권역 규제체계

수도권시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행위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권역 및 공간구조 조정이라는 양대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공장과 학교의 총량규제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표 2-6> 수도권 관련법 및 계획의 핵심내용

수도권관련 법 및 계획	주요 임무	세부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행위제한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과밀부담금 부과
		총량규제(공장, 학교)
		광역시설 설치부담
수도권정비계획	공간구조 조정	광역기반시설의 정비
		권역정비, 공간구조 개편
		환경보전 관리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아래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권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세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성장관리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권역별 행위제한의 내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7조 과밀억제권역 및 제9조 자연보전권역에는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예외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4조를 참조).

<표 2-7>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구분 및 행위제한

권역구분		행위제한의 내용	
과 밀 억 제 권 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 제한	<input type="checkbo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함) <input type="checkbox"/> 공업지역의 지정
		예 외	<input type="checkbo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광역시·도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성 장 관 리 권 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 제한	<input type="checkbox"/>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 등 <input type="checkbox"/>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권역구분		행위제한의 내용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 제한	<input type="checkbox"/>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input type="checkbo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예 외	<input type="checkbox"/>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과밀부담금 부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인구집중유발 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¹³⁾, 판매용 건축물¹⁴⁾, 공공 청사, 복합 건축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4호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1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4호 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물¹⁵⁾을 건축(신축·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건축물 중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건축물 중 일정 면적 이하의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건축비의 100분의 10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등을 고려하여 건축비의 100분의 5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부록 참조).

(3) 총량규제

총량규제란 공장, 학교 등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 15)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 4호 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총량규제는 공장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라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면적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학교총량규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 증가 총수를 정한다.

(4) 광역시설 설치부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기 위해 인구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인구집중 문제, 교통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I. 상수원관리 규제체계 현황

상수원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법은 수도법이 있으며 그 외 관련법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정책수단 중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사전예방적 대책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배출규제인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수질기준은 일반적인 지역에서 오염원을 관리하는 수단이다. 모든 오염배출을 100% 완벽하게 관리가 가능한 경우, 배출규제방식을 취할 경우 규제의 합리적 측면에서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완벽한 처리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특히 상수원과 같이 국민의

생명에 직결된 경우는 배출규제만으로는 완벽히 대응하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 방식과 결합된 배출시설의 입지규제 방식을 취할 경우 규제의 강도나 심각성은 가일층 커지나 상수원지역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배출규제는 규제적 측면의 합리성이나 타당성 여부 측면에서 적절한 수단이나 수질에 민감한 지역에서는 사전예방적 수단으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타당성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표 2-8> 팔당 상수원 보호 토지이용규제 법제 근거

구분	상수원 보호 구역 직접 규정	상수원보호 간접 규정							
		환경법제				토지이용법제			
	상수원 보호 구역	특별 대책 지역	배출 시설 허가 제한 지역	수변구역	규정 및 지침	용도 지역	자연 보전 지역	개발 제한 구역	공장입지 제한
법률	수도법	환경 정책 기본법	수질 환경 보전법	한강 수계법	골프 관리규정	국토 이용 관리법	수도권 정비 계획법	법	산업입지 및 개발법
관리 수단	수질 오염 유해 행위의 금지와 제한	토지 이용 및 시설 설치 제한	산업 폐수 시설 설치 허가 제한	상수원에서 일정거리 이내 토지이용 규제	상수원에서 일정거리 이내 토지이용 규제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	자연 보전 권역에 대한 시설 제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상류20km 이내 지역에 개별공장 입지제한

1. 상수원보호구역 직접 규정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직접 규정으로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이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법

수도법 제2조는 국가는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¹⁶⁾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 제7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를 버리는 행위와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¹⁷⁾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중축·개축·재축(再築)·이전·변경 또는 제거,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도법시행령에서는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

16) 수도법 제3조 제2항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 등을 말한다.

17) 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①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2.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3.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4.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어로행위는 제외한다. 5.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6.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일반친환경농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같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제8조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은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동법 제9조는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 2-9>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기구수리시설, 생산품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및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의 지원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수질 보전과 조화다하도록 영농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복지증진사업	상수도시설의 지원, 수세식 화장실,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개별농가의 분뇨 또는 생활오수 처리시설의 지원, 진료소(주민건강진단 포함), 의료기구 및 구급차의 지원과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부조사업,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지원, 그밖에 환경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구분	세부 사업 내용
<p>육영사업</p>	<p>교육기자재, 도서의 공급,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시설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과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그 밖의 사업</p>	<p>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 정화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의 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행위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그 구역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이주나 전업에 대한 지원 사업</p>

그러나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토지이용제한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집단 항의 및 민원발생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급수지역과 보호구역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나 운영비 등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¹⁸⁾

(2) 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관리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와 원수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에서 지정한다. 일정한 경우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축사·공장 등

18) 조대현,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 국회 법제실, 2007, 15쪽

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심층지하수를 취수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지질)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은 하천수와 복류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킬로미터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취수량, 취수비율, 주변지역의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에 따라 표준거리를 가감(가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폭은 집수구역으로 하되 집수구역 중 빗물, 오수(오수)나 폐수가 제방 등에 의하여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호소수의 경우 하천수나 복류수의 경우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정하되 상수원전용댐, 1일 취수량 10만 톤 이상의 상수원, 그 밖의 지역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는 표준거리의 산정기점을 호소의 만수위선으로 한다. 이 경우 만수위구역에서의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집수구역의 면적이 15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취수지점에서 유하거리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지하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지하심도(지하심도), 수질, 취수량, 인접지역의 토지이용상태, 토양의 투수계수(투수계수), 지층의 구조, 지하수맥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표 2-10>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

평가인자 (항 목)	평 점		
	-3	0	+3
수질등급	상수원수 I 급	상수원수 II급	상수원수 III급
취수량	1일 3천톤 미만	1일 3천톤 이상 1만톤 미만	1일 1만톤 이상
취수비율 (호소의 경우)	0.1미만	0.1이상 0.5미만	0.5이상
개발잠재력	없음	보통	있음

※ 비 고

1. 수질등급의 판정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항목 중에서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생물화학적산소 요구량을 기준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화학적산소요구량, 총인 및 총질소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 취수비율 :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갈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호소수의 경우는 취수량을 유효저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3. 개발잠재력은 상수원의 지리적 위치, 경관, 토지이용전망 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4. 위 표에서 평가점수의 합계를 항목수로 나눈 값과 표준거리를 합산한 값을 보호구역의 지정거리로 한다.

보호구역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시·도지사에게 보호구역을 지정신청하고 시·도지사는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행위허가의 절차 및 기준

수도법시행령 제12조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중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는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에 의하여 생계의 수단으로 자망어업이나 연승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원거주민, 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자),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이 하는 어로행위의 경우 금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어로행위’란 상수원 보호·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관리청에 한함) 및 자망 또는 주낙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를 말하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도법시행령 제13조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일정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를 허가하고 있는데 상수원관리규칙에 그 구체적인 종류와 규모가 규정되어 있다.

<표 2-1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되는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종 류	내 용	비 고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종 류	내 용	비 고
생활기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주택의 신축 	<p>-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p> <p>-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증축 	<p>-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p> <p>-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p>
소득기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잠실), 버섯재배사, 생산물저장창고, 담배건조실,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기자재보관창고, 관리용 건축물, 온실,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등 	<p>동 규칙 제12조 참조</p>

제 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보전권역 및 관련규제 체계 현황

종 류	내 용	비 고
주민공동 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 마을회관 ●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의 경우로 한정)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관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 ●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 ● 효열비(효열비), 사당 등 유사한 시설 ● 그 밖의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	-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시설 ●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

종 류	내 용	비 고
		축물

2. 기타 관련 규정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용에 관한 통합지침, 골프장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으며 본 절에서는 주요 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는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제10조제1항19)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당해 지역안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시·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환경부

19) 제10조 (환경기준의 설정) ①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 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을 마련하여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본 고시에 의해 특별대책지역은 팔당·대청호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I 권역과 II 권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팔당·대청호의 권역별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12> 팔당·대청 특별대책지역 지정현황

구 분	계	팔당호	대청호
계	3시 7군 54읍·면 1구(2,831km ²)	경기 3시 4군, 43읍·면(2,102)km ²	충북 3군 11읍·면 대전 1구(729km ²)
I 권역	1,659km ²	1,223km ²	436km ²
II 권역	1,172km ²	879km ²	293km ²

그 내용으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입지금지 및 1일 500m³ 이상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건축연면적 800m² 이상의 일반건축물 및 400m² 이상의 숙박·음식점의 입지제한, 대규모 축산시설(우사 450m² 이상, 돈사 500m² 이상)의 입지제한, 가두리양식장의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 불허, 기타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 변경억제 등이다.

<표 2-13> 상수원 특별대책지역내 권역별 주요규제사항

I 권역	II 권역
- 중금속 등 특정 유해물질이나 500톤/일 폐수배출시설설치 금지	- I 권역과 같으나, 500톤/일 폐수배출 시설에 대해 폐수처리장 유입, 또는

I 권역	II 권역
- 음식, 숙박시설은 400㎡이상, 일반건물은 800㎡이상 건축금지(하수처리장 유입, 오수정화하여 BOD 20ppm 이하로 방류) - 우사 400m2, 돈사 500m2이상	폐수정화하여 BOD 20ppm이하로 방류하는 경우는 시설가능으로 완화

(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17조는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4대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 호소²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도로·구간 및 자동차는 통행할 수 없다.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는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유류,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 있다.

동법 제32조 제1항은 오염원 관리를 위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 제5

20)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15호. “상수원호소”라 함은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해 호소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항에서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3조제5항에서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전술한 지역 중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환경기준이 매우 좋음(I a) 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점에서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함),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전술한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함)이다.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²¹⁾, 용도지구²²⁾, 용도구역²³⁾이 지정되면 용도지역 안에서는 동법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행위제한의 효과가 수반된다.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법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또한 동법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데 동법에 의한 지역 및 지구와 상수원보호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Ⅲ.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체계 현황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체계 현황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산

-
- 21) 제2조 15호.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 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2) 제2조 16호.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3) 제2조 17호.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는 일반적인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로 구분된다.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이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초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업단지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14>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구분 및 지정

산업단지구분		지 정
국 가 산 업 단 지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input type="checkbox"/>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함 <input type="checkbox"/>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개발계획 변경 포함)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Ⅲ.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체계 현황

산업단지구분		지 정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절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사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함(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음)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개발계획 변경 포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에 지정된 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함(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음) □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음 □택지개발예정지구(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음
농공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함 □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

산업단지구분		지 정
	정된 산업단지	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음
준 산 업 단 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이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초지 및 시설물	<input type="checkbox"/> 준산업단지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함 <input type="checkbox"/>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장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함 <input type="checkbox"/> 면적·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음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제정되었다.

동 법상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산업집적기반시설’이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동법은 공장의 신설 등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함)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의 경우를 인정하고

Ⅲ.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체계 현황

있다[시행일 2009.8.7].

제 3 장 입법평가

본 장에서는 전술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체계와 상수원 및 산업단지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입법평가기준으로서 규범론적, 법사회학적, 비교법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I. 규범론적 평가

1. 입법목적의 달성도

환경보전이라는 국가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여도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가 민주적 법치국가의 틀 속에서 봤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 규제수단은 환경보전이라는 목적달성에 적합한 합목적적 수단이어야 하고, 효과가 비슷하다면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나아가 목적과 수단 사이에 적절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정한 사유재산권 보장의 원리에 전면적으로 배치되어서도 안된다.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에서 상수원으로부터 불과 몇 킬로미터 상류 지역에서는 유하거리를 이유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상수원에 인접한 주변지역은 주거용 주택도 중·개축을 하지 못하여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지구 지정이 수질보전이라는 목적달성에 부적합하면서도 과잉된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리고 현행 입지규제와 농도규제 중심의 규제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의 임의제 시행도 문제가 있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확대시행

24) 조대현,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 국회 법제실, 2007, 22~27쪽 요약정리

을 위한 법제정비가 요구된다.

2. 수용성

녹지보호의 의미가 없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지정은 사전조사의 미비나 애매한 기준에 의해서 설정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 예로 하천을 경계로 하여 일방의 하천연안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당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됨에 반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방의 하천연안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문제도 있다. 이 경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규제 지역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은 동일한 하천을 오염시킴으로 인하여 규제지역의 지정목적은 이룰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지역의 설정은 환경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거나 도면상의 편리성대로 지정되어서는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한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지역, 일일폐수배출량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각 지역의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법제도 정비도 요구된다.

3. 실효성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을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공권력에 의하여 토지의 이용을 그 용도에 맞도록 제한을 가하거나 규제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규제지역 내에 소재하는 토지재산권의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일부 법률에서

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지만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대안으로서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한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효적인 대안일 수 없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별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그 결과 1980년에 35.5%이던 수도권 인구비중이 2007년에는 48.9%로 늘었고, 수도권 과밀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지출과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저비용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런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효율성을 상실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권역별 행위제한의 내용에 있어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관련 기업 및 거주민으로부터 불만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즉 성장관리권역은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효율적으로 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산업단지과 준산업단지는 규정상 특별한 차이가 없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구분을 통한 규정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가 요구된다. 그리고 현행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환경호르몬, 각종 신규 화학물질 등 수질기준이 없어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의 연계를 위한 법제정비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 폐수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절차 규정이 부재하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배출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자 및 관계 행정당국의 전문지식이 미흡하여 배출허가 신청서가 충실히 작성·검토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4. 입법체계성 분석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각 개별법마다 필요에 의하여 규제체도가 양산되어 규제체계의 일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 여러 종류의 규제가 입체적이지 못하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 불필요한 중복이 있으며, 여러 유형의 지역·지구 지정도 통합적으로 규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면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현재 수도권 상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한강수계법에 의한 수변구역 등 과도한 중복규제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환경관련 법률에서는 지역·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질적인 면에서 법규성을 가지는 고시일수도 있지만 토지이용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 또는 법규명령으로 하여야 할 토지이용규제를 형식상 행정규칙의 일종인 고시로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우리헌법 제37조 제2항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고시·훈령 등을 제외한 관련 법령이 업무처리에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²⁵⁾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수도권 규제가 체계조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수도권 규제 관련 주요 조문들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²⁶⁾

II. 법사회학적 평가

이하에서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입법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기존에 환경부에서 용역사업으로 수행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회학적 분석을 하였다.²⁷⁾

25) 강현철·차현숙, “공장설립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2008, 247-250쪽, 한국법제연구원 참조.

26) 이와 관련하여 2009.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2008. 12. 23)에 따르면 동법상의 다음과 같은 수도권 규제내용을 ‘법률’로서 규정하거나 또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가.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3호).

나. 대규모개발사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4호).

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4조제1항제3호와 제9호의 일부”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4조제2항).

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법률상의 별표에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마.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사.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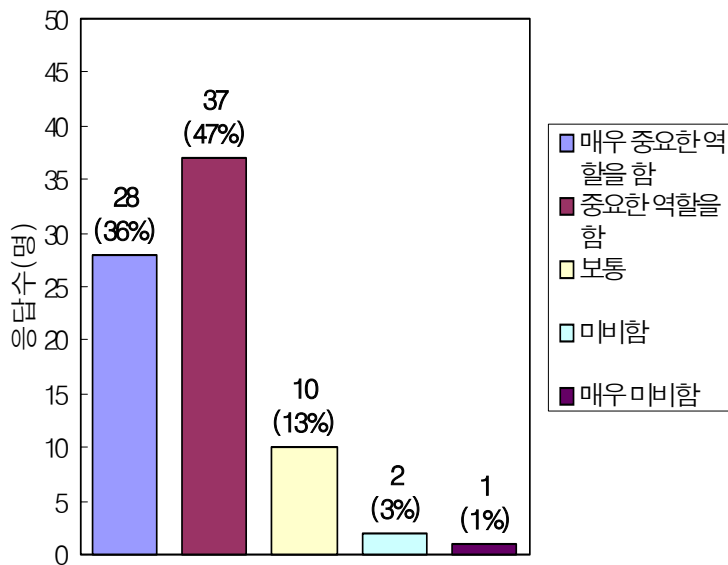
27) 설문대상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와 보호구역 관리기관인 유역환경청, 그리고 전문가 등 224명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78명으로 총 회수율은 34.8%이었다. 이하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2008, 30-56쪽 참조.

1. 상수원보호구역의 인식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수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중요성 인식 정도, 지정 및 지정기준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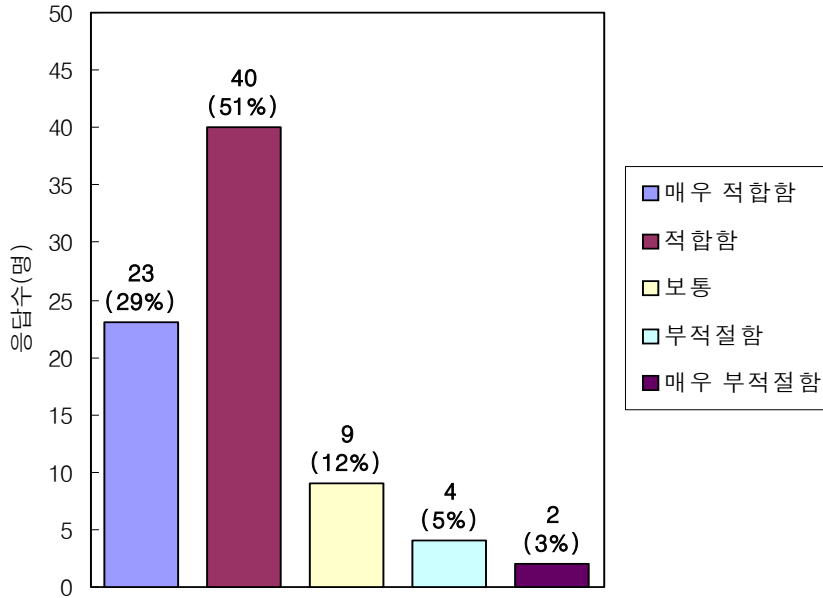
상수원보호구역이 상수원보호와 수질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관한 설문에서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긍정적인 견해가 83%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적합성에 관한 긍정적 견해(80%)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림을 통하여 살펴보면 각각 다음과 같다.

<그림 3-1> 상수원보호구역의 역할²⁸⁾



28)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개선방안 연구, 2008, 31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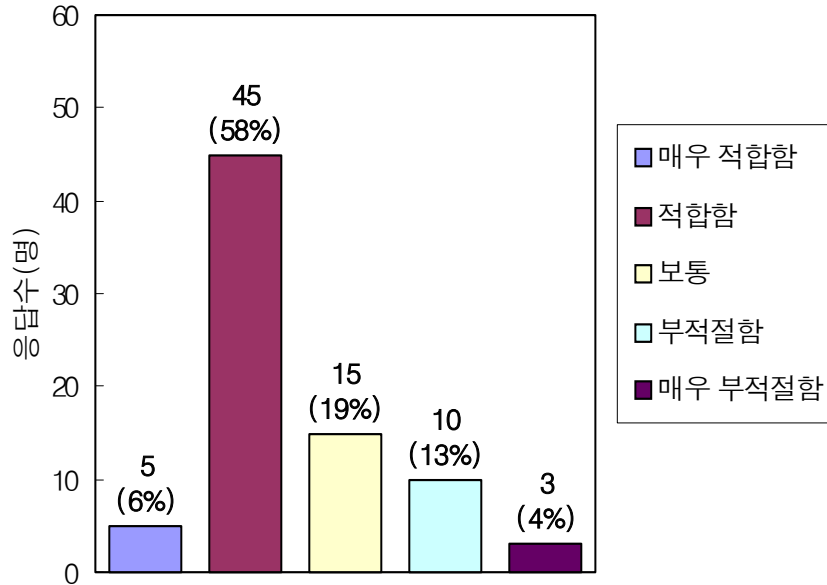
<그림 3-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²⁹⁾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견해가 64%에 그치고, 부정적 견해가 17%로 나타났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 구체적 의견을 정리하면, 대체로 보호구역제도는 존치할 필요가 있으나 그 보호구역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견해가 주류이며 그 이유로서 최근의 정수처리기술이나 토양, 주변환경, 지역적 수온의 차이, 하천의 자정작용 능력 등 지역특성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획일적이고 행정편의적인 구역설정을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된 설문내용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29) Ibid.

<그림 3-3>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기준³⁰⁾



이외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지역주민의 반대 및 각지자체의 개발 계획과의 밀접한 관계 등 보호구역 지정 지연 및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다. 그리고 지정을 하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범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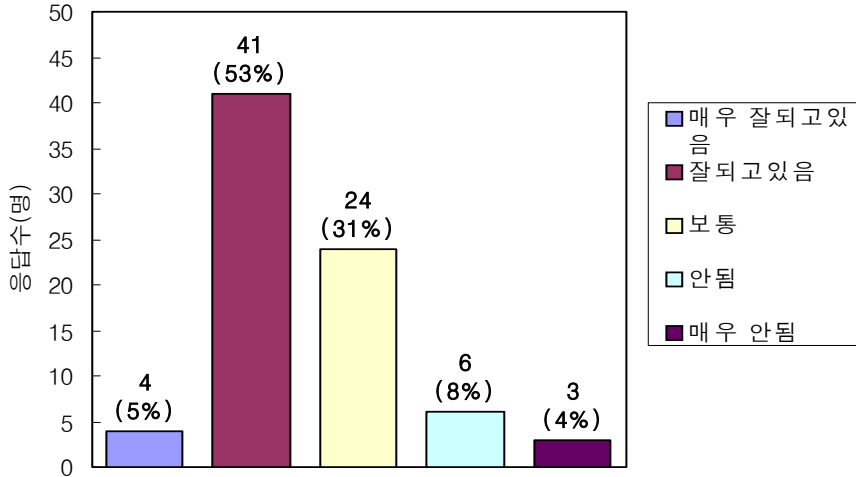
2.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먼저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 목적에 맞게 유지 및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련하여 약 5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부정적인 답변은 12%이고 나

30) Ibid., 33쪽.

머지 31%는 보통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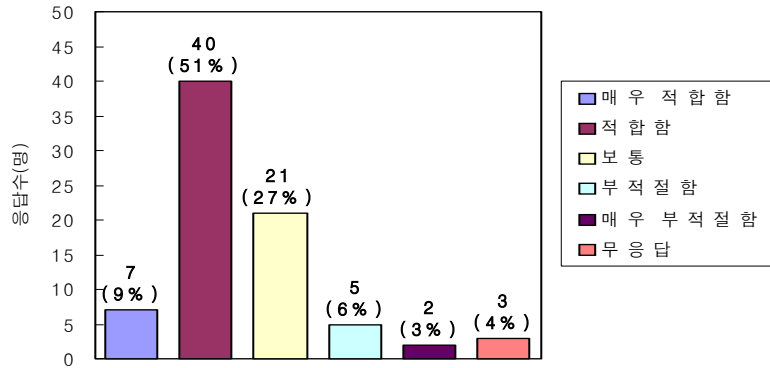
<그림 3-4>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³¹⁾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적정성 여부(여기서는 수도법 제7조 3항 및 시행령 12조의 내용에 한정함)와 관련하여 긍정적 견해가 60%이며, 부정적 견해가 약 9%이다. 특히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보면 지방상수도는 최소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0km이내인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 승인금지과 마찬가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1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무방류시스템, 분류식관거를 이용한 유역배출 등에 대한 규제완화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견해 및 행위규제의 내용을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많다는 견해도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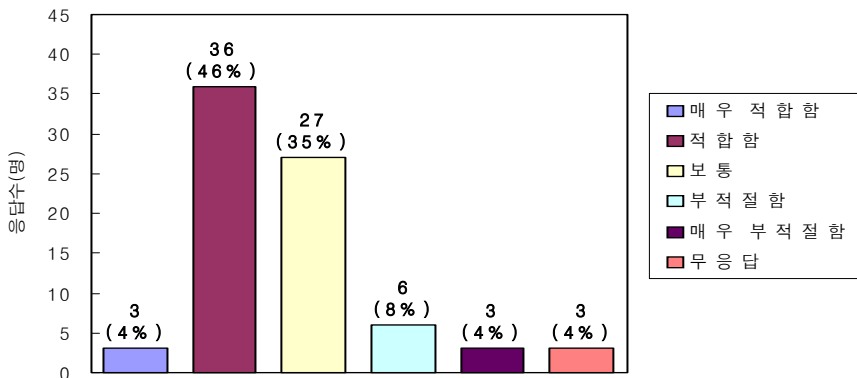
31) Ibid., 37쪽.

<그림 3-5>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 행위³²⁾



이와 달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허가 및 신고 사항, 허가·신고기준(수도법 제7조 4항 및 시행령 13조, 14조)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견해가 50%, 부정적 견해가 12%인데, 이것은 다른 항목에 비하여 현실적인 부분에서 행위제한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그림 3-6> 상수원보호구역의 행위허가 및 신고³³⁾



32) Ibid.,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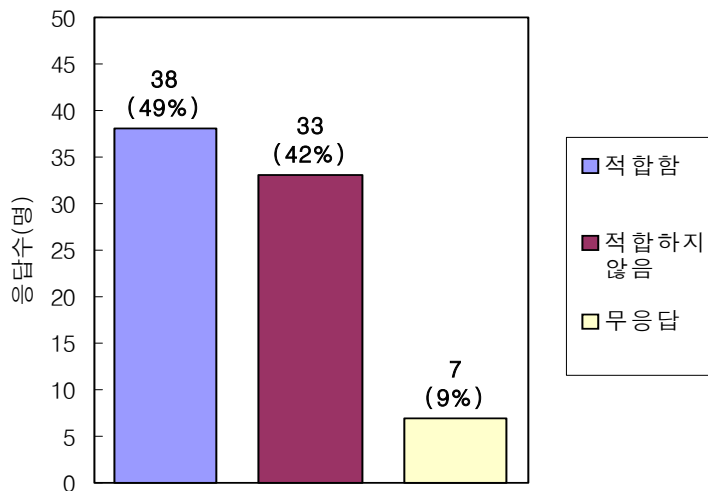
33) Ibid., 40쪽.

또한 상수원 관리자들이 관리업무를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제기한 문제점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존치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25%)로 조사되었다.

3. 공장입지규제에 관한 사항

본 연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규제 완화로 제시되었던 입지규제 거리(취수장으로부터 7km)의 적정성여부와 관련된 설문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49%, 부정적 의견이 42%에 해당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3-7>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완화 관련 의견³⁴⁾



4. 소결론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입법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전문가 등의 설문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법사회학적 분

34) Ibid., 53쪽.

석의 결과 우리나라 수질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제도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현재 지정·관리되는 상수원 보호구역별 지역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관련법 및 규정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요구되어 진다.

생각건대 환경문제는 다양성과 복잡성, 기술성과 과학성, 지역성, 통합성을 고려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수단인 입지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적 특수성 및 관리기술의 발전도 함께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Ⅲ. 비교법적 평가³⁵⁾

1. 미 국

미국 연방정부의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가 상수도 수질의 규제책임을 맡고 있으며 각 주에서는 보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수도의 수질 보전을 관장하되 EPA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상수도의 수질보전 관련해서 『Safe drinking Water Act』와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 근거 하고 있다(Section 1453(a)(2)(A)).

미국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수원의 종류에 따라 지하수와 지표수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지표수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는 취수구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Topographic Boundary Delineation Method를 이용하여 취수구로 유입되는 지천 및 하천을 포함하여 각 주의 지리, 사회적인 조건에 적합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Topographic Boundary Delineation Method

35) 이에 관한 사항은 이하 환경부,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2008, 34-48쪽 참조.

는 Watershed의 지정과 Watered Area를 지정하는 2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Watershed 지정 방법은 취수구가 포함되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으로 포함하는 모든 수역을 고려하여 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지형적 높이를 지정하여 등고선을 그린 후 그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Watershed Area 지정 법은 취수원 상류 및 취수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인근 수역에서 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들을 연결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거리 및 유역면적은 개별 주정부가 주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운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상수원 보전의 중요성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Watershed management program 제정의 중요성도 커졌다. Watershed management program은 수변 구역 내에서의 다양한 오염물 유입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토지이용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강력하게 개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수자원보호를 위해서는 수자원시설 및 관련기관 뿐만 아니라 주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토지이용의 규제 및 매입에 관해서는 유역위원회와 토지관리부(land management agency), 그리고 시민들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수립 상수원으로써 지하수 보호를 위하여 Wellhead Protection Area(Section 14288(e))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수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Guidelines for Delineation of Wellhead Protection Areas(1987)를 만들어 보호구역 지정 시 기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미국 EPA는 각 주가 EPA가 승인 취수정 보호 프로그램(EPA- approved wellhead Protection(WHP) Program)에 따라 지하수층의 위치, 지질, 토양, 지하수 흐름 방향, 표면경사 토지이용 등에 따라 실정에 맞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상수원 보호구역 설정을 위하여 지하수 이동시간 개념, TOT(the specified period of time of time of travel)

를 도입하였다. 지하수가 취수원까지 도달시간이 5년 이상 되는 거리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방지를 안전거리의 판단기준이 된다.

2. 프랑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가 발달된 국가로 전국적으로 일괄된 상수도 정책이나 환경정책이 없이 각 유역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상수원으로는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은 지하수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1964년에 “Law on Water”를 통과시킴으로 프랑스의 수자원 정책이 확립 되었다. 모든 신규 취수장은 보호구역 설정을 의무화 하였고 기존의 취수장은 보호구역 설치가 권고사항이다.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호구역 대상이 되는 지역에 대하여 각 분야의 인정된 전문가가 지질조사, 유역조사, 토양조사 등을 수행한 후 원접, 근접, 인접보호구역 세 가지 보호구역으로 구분한다. 인접보호구역은 취수원 근처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구역 20m×20m 정도이며 토지를 구입하여 보호하고, 근접보호구역은 어떠한 활동과 설치물의 설치를 금지시키는 구역으로 수 ha에 달하며, 원접보호구역은 활동과 설치물의 설치를 제한시키는 구역으로 수십 ha에 달한다. 구역 범위는 토지대장계획에 보고되며 근접보호구역에 대한 금지조항과 규제조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원접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권고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각 지자체의 장은 취수원 보호의 공익성 결정 요구서 및 지하수의 방향에 대한 조사서를 지방정부에게 제출하고 각 지방정부의 장은 관련부서의 자문을 받고 위생성의 조언을 들은 후 조사위원을 임명하여 취수 2주일간의 수정보온작업을 하여 보고 한다. 보고서는 공공에게 열람되고 관련된 소유권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인접보호구역을 지정

하고 토지를 구입하여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밖의 부속 토지를 확정하게 된다.

프랑스의 유역관리는 하천유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지 않아 프랑스 전역을 6개 유역으로 구분하고 각 유역청(River Basin Agency)을 두고 있다. 각 유역에 Basins committee를 두고 물에 관한 입법기구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는데, Committee는 물 관련 입법기구의 역할 수행하고, 물의 사용자 대표, 관련부처와 지방의회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Committee는 유역청의 계획과 규제, 재정정책방향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영 국

상수원관리를 위해 환경청(Environmental Agency, EA)이 취수 허가 와 수질에 대한 규제·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하천 유역을 경계로 10 여개의 유역관리청으로 구분하여 하천을 관리하고 있다. 각 중소기업화 된 유역관리청은 수자원개발, 수처리, 용수공급, 하수처리, 하천관리, 오염원관리, 홍수관리, 물 관련 위락활동, 수자원보전 등의 물에 관련된 업무 총괄하고 있다.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1989년 Water Protection Zone을 지정하고 있다. Water Protection Zone은 정부가 직접 지정하며 유독물 유해물질, 오염물질을 수계로 배출할 수 없고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활동은 금지된다.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한 상수원구역 제도를 표류수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Water Protection Zone을 지정할 때는 Secretary of state가 환경장관과 상의하여 어떠한 독성물질 또는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거나 유역의 특정지역에서 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고 특정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각 유역관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등의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상수도 수질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하수가 영국 전체 상수원 1/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수위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우물에 대하여 Environmental Agency's Groundwater Protection Policy(GPP)에서 수원보호구역(Source Protection Zones, SPZs)을 지정하여 관리 (1992년에 약 2000개의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지정)하고 있다. SPZs는 수원의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을 4개의 구역(zone)으로 구분하고 행위나 방류기준에 대한 강제적 제재를 가한다. 2개의 zone은 오염물질의 이동거리에 따라 산출되고 Zone3은 수로의 이동영역에 따라 지정되며,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Zone of Special Interest로 선정하여 관리 된다.

Zone I (Inner Protection Zone)은 지하수면 아래로 취수지점까지의 지하수 이동시간이 50일 이내인 지점이나 최소반경 50m 이상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지역은 독성화합물이나 수인성 병원균의 생물학적 제거(biological decay)가 가능한 거리 및 시간에 따라 지정한 지역이다.

zone II(Outer protection Zone)는 지하수 이동 시간이 400일 이내의 지역이나 지하수 수집지역 전체의 약 25%이상의 지역으로 지정하고 400일 지정의 근거는 난분해성 오염물질(slowly degrading pollution)의 지연, 희석, 감소에 필요한 최소시간을 산정하였다.

zone III(Total Catchment)은 지하수로부터 먹는 물의 취수 및 다른 지역으로부터 취수지점에 들어오는 모든 수역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zone of Special Interest는 지하수 집수지역은 아니나 점오염원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한하여 특수하게 지정되는 지역, 일반적으로 대수층이 아닌 지역이 많으며 오염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취수원에 오염물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지층에 대하여 지정하여 수자원의 보전 및 관리하는 것이다.

4. 독일

독일의 상수원보호구역은 각 주의 조례로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설정조건과 구체내용은 독일수도전문협회(DVGW)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는 EU의 지침에 의해 보상하고 이와 별개로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주민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베를린은 상수원의 100%를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46%(자연 32%, 인공 14%)충전에 의한 이용, 54%(지표수 24%, 하수처리장 방류수 30%)는 강변여과에 의해 이용하고 있다.

5. 일본

(1) 상수원보호 관련 법제도

일본의 경우 1994년 「특정수도 이수 장애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수도원수 수질보전사업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전에는 상수원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상수원보호구역제도 자체도 없었다. 「특정수도 이수 장애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고, 도도부현이 수질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목표수질을 정하여 오염방지를 위한 규제를 실시를 촉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도원수 수질보전사업으로는 하수도 정비, 분뇨처리시설 정비,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 수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취득, 하천준설, 도수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수질오탁방지법」과 별도로 부영양화에 따른 각종 문제들이 발생함에 따라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을 1984년 제정하고 198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은 호수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호소를 지정하고, 지정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질

보전계획을 책정하고, 하수도정비 등의 수질보전 사업, 오염원 규제, 호소연안 자연환경 보호 등의 대책을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우리나라 환경보전법상의 특별대책지역과 유사한 것으로 상수원 보호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과 사업들, 예를 들면 분뇨처리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해서 관련된 법률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수질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수변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최근에 National Integrated Water Resource Plan(Water plan200)을 제정하여 지속적인 상수원 공급 시스템 유지, 상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책 강화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효율적 기반 구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수도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수도수원림 조성·관리

동경도는 Tama강 상류의 Lake Okutama와 하천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도수원림(水道水源林, Watershed forest)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다. Tama강 상류의 수도수원림은 사유지 313ha를 포함하여 전체면적은 21,630이고, 사유지에 대해서는 동경도수도국이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수도수원림은 나무·토양 및 동물들의 활동으로 발생 되는 오염원의 수체로의 유입을 최소화하여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숲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벌목 및 침식방지 등 숲 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입지규제

오염원입지와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는 없고, 각 지방정부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한 규제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는데 동경은 환경국의 하천규제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동경의 조례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별로 배출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며 2001년 4월에 하

수도 기준이 강화되었다. 동경도 타 지역에 비해 배출기준이 엄격하여 기존 공장들도 지방으로 이전해 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는 하나, 각 배출시설은 배출기준만 만족시키면 상수원권이 거리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동경인근의 가나가와현 히라쓰카시의 사무카와(寒川) 하천 하류의 정수장 바로 맞은편에는 캐논의 생산 공장이 자리 잡고 있고, 지역 쓰레기 소각장도 정수장 상류 쪽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을 따라 하류 쪽으로 3km가량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다. 배출수 수질 기준만 만족시키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할 필요 없이 하천으로 직접 배출할 수도 있다.

6. 시사점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자국의 사회적·자연적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하고 있다. 영국, 독일 및 프랑스 등과 같이 상수원으로 지하수 활용이 많은 나라는 지하수자원의 보호에 관한 연구 및 제도가 발달하였다. 지표수나 지하수의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오염에 민감할 수 있는 취수지점 인근지역은 적극적 토지매수를 토하여 오염원의 유입을 통제하거나 행위규제를 강화하고 원거리를 갈수로고 행위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같이 행위규제의 내용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각각의 구간의 크기는 그 나라의 자연 환경적 특성에 맞게 거리를 설정하고 있지만, 미국의 South Carolina와 같이 도달시간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특히 지하수의 경우는 일정 거리개념보다는 도달시간의 개념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몇몇 나라에서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 따라 각지방정부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구역의 설정

및 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규정은 없지만, 도도부현이 수질보전정부의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도 독일수도전문협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주정부차원에서 조례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상수원 보호정책은 각 주(State)에서 수원의 종류, 취수 및 방류량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그 경계를 정하고 이따. 지표수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경계를 정하도록 Topographic Boundary Delineation Method를 마련하였고, 지하수는 “Guidelines for Delineation of Wellhead Protection Areas” 기준이 마련되어져 있다. 각 주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설정한 거리는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취수원을 중심으로 영향의 정도에 따른 구역을 구분하여 규제내용 및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South Carolina는 지표수가 24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상류하천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수준의 하천주변 토지 이용을 규제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Louisiana 주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의 기본원칙은 취수지점으로 흐르는 모든 하천 및 지천의 수역이 포함되며 주 경계선 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취수구로부터 5 마일(8km)을 기준으로 critical area와 non-critical area로 구분하여 관리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Massachusetts 주는 수변보호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Watershed Protection Act(1992)를 제정하였고, 취수장이 존재하는 저수지의 400피트와 하천의 200피트이내 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축건립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자원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New York주는 4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00~150m은 토지매입을 통하여 완충지대로, 300m 이내는 출입을 통제하고 토지이용을 규제, 1마일(1.609km)이내에서는 오염행위규제 및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면 5마일(8km)이내는 중요 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다.

Los Angeles는 수자원의 대부분을 하천 및 저수지, 댐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수질관리를 위해서 상류지역의 토지매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하수가 전체 상수원의 1/3을 차지하는 영국은 10여개의 중소기업화된 유역관리청이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청이 취수 허가과 수질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지표수에 대한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취수정으로부터 500m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매수와 살충제 및 비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상류의 농업지역은 질산염감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취수정으로부터 10km를 신규 하수처리장의 방류관리의 이격거리를 제한하는 등의 기타조치를 취하고 있다. 독일은 상수원 보호구역을 각 주의 조례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수도전문협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설정 조건과 규제내용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상수원으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지하수 취수정을 중심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호수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변구역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상수원 공급시스템을 유지하고 상수자원 부족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하며 효율적 기반 구축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National Integrated Water Resources Plan을 제정하였다. 지방정부에서 상수원보호를 위한 조례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상수원의 수질 및 수량을 보존하기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의 행위규제는 각 국가 및 지역정부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 첫 번째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거리 기준의 차이가 있다. 조사된 지역에 근거하여 볼 때 미국의 경우 가장 넓게는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모든 유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Louisiana주나 New York 주는 5mile(8km)까지를 상수원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도 3개 또는 4개 정도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제 내용 및 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류지역의 토지매입을 통한 완충지대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으로 지하수의 이용률이 높은 유럽은 지하수의 특성상 보호구역의 지정면적이 좁지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3개 정도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규제방법을 달리 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각국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제4장의 관련 부분에서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제 4 장 대안 및 권고

I. 대안 : 개별 규제법령 개선안

입법목적의 달성도, 수용성, 실효성 및 입법체계성 분석을 포함하는 규범론적 분석과 설문 등 법사회학적 분석 및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와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자연보전권역의 공장입지규제에 대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개별 규제법령에 대한 개선안은 크게 입지관리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과 폐수배출시설 관련 인·허가체계 관련 개선안, 폐수시설 배출기준 관련 개선안 및 특성수질유해물질 관리 관련 개선안으로 나누어 제언한다.

1. 입지관리 제도 개선안

현행 입지규제 중심의 정책은 상수원 관리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입지규제 중심의 상수원 관리 치중에 따라 사유재산 침해 및 개발 욕구 제한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입지규제 정책을 보완함과 동시에 총량제, 배출규제 개선 등 수질관리정책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1) 권역별 입지규제의 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행위제한의 내용에 있어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간의 규제의 정도에 따른 차별화가 요구된다.³⁶⁾ 동법 제6조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36) 복잡다기한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 등의 명칭에 대한 적합하고 일관된 개념정립을 통해 토지이용규제들간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건설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개념정립 및 유형화연구, 2006 참조.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의 해석상 성장관리권역은 수도권 인구의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완충지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볼 때 동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와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권역별 행위제한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8조 및 9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2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와 제13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제14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보전할 가치가 높은 구역을 뜻하며, 성장관리권역에 대해 자연보전권역과 유사한 정도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성장관리권역의 수요를 자연보전권역으로 떠밀어 자연보전권역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한 기업 활동의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필요한 경우 중첩규제(목적이 다른 중첩규제에 한함)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보전하되 규제의 허용은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한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표 4-1> 권역별 입지규제의 개선안

문 제 점	개 선 안
권역별 행위제한의 내용에 있어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간의 뚜렷한 차이가 없음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p>■ 성장관리권역의 규제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 -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한 기업 활동의 제한을 완화 </div> </div>

	<p>■ 자연보전권역의 효율적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한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제한적으로 허용 - 필요한 경우 중첩규제(목적이 다른 중첩규제에 한함)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보전
--	--

이와 관련하여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데 먼저, 현행법에서 시행령으로 각종 권역의 행위제한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수도권 관리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과밀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수도권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등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즉 수도권은 전국의 인구와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목표인구의 설정과 그 계획에 적합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업지역·대학신설 등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의 허용은 과밀비용과 지방의 황폐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별로 구체적인 인구 및 산업배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국민적 동의 아래 장기적인 국토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상의 별표에 정하도록 하고(안 제6조제2항),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그리고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안 제18조제2항).³⁷⁾

또한 과밀억제권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지역을 지정하였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과밀지역인 서울시 이외에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당시의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즉 서울시와 접경지역인 안양, 광명, 과천 등 10개 시·군지역 도시의 연담화(평면적 확산)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82.12.31) 제정 이전보다 10여년 앞선 1971. 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01.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보다는 확실적인 행정 편의적 규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기초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도 모든 개발이 강력히 제한되고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37)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선의원 대표 발의, 2008.12.3. 참조.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³⁸⁾

(2)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의 활성화

산업입지정책인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규제의 일관성, 관리의 용이성,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개별입지 집단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계획입지의 선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 제공과 더불어 사회환경적·경제적·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는 등 관련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소규모 개별공장들이 배출하는 오수공동처리시설이나 하수공동처리시설을 유도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공장들의 공동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경우에 그 관리상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³⁹⁾ 이와 같은 관점에서 개별입지 집단화의 활성화 방안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는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산업단지⁴⁰⁾, 일반산업단지⁴¹⁾, 도시첨단산업단지⁴²⁾, 농공단

38) 수도권경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2008. 2. 25. 참조.

39) 환경부,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2008, 82쪽.

40)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41)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단지

지43)로 구성되어 있다(동법 제2조 제5호). 또한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이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지정된 일단의 초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동조 제7호).

동법에 따라 계획입지인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집적화를 위한 준산업단지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계획입지는 사전에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개별입지는 사후에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상 특별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즉 동법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4항에는 산업단지에 관한 주요 규정을 준산업단지에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목적의 실효성을 높을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적·계획적·의무적인 산업단지와 사후적·개별적·반자율적인 준산업단지로 구분하는 것이다. 기존 규정과 다른 점은 산업단지에 의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자연환경 및 각 산업단지별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산업단지의 경우 일정한 기준(특정 오염물질 배출시설, 일정 오염물질배출량 이상 배출시설 등)을 세워 해당되는 기업은 산업단지에의 입지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규정(가칭 ‘산업단지입주의무기업’)을 동법 제7조의 5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입주의무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해당지역 개별 기업가들의 요청에 의해 또는 해당지역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한다. 그에 관한 사항은 동법 제8조의 3에 이어서 제8조의 4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고, 다만 그 지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3(준

42)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3)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에 따르도록 한다.

그러나 본 방안은 기업이 현재의 개별입지의 장점을 포기하고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로의 입주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단지입주의무기업의 대상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포천 연천 ‘한센촌 염색공장’을 최첨단 섬유산업단지로 전환하여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는 것도 그 사례가 되겠다. 이 경우에도 상수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유해물질의 관리 안전성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 4-2> 계획입지 및 개별입지 집적화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의 구분 및 활성화 미흡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border-left: 1px dashed black; padding-left: 10px;"> <p>■ 산업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적·계획적·의무적 - 특정 오염물질 배출시설, 일정 오염물질배출량 이상 배출시설 등에 해당되는 기업은 산업단지에의 입지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조항. 가칭 ‘산업단지입주의무기업’을 신설 <hr/> <p>■ 준산업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적·개별적·반자율적 - 산업단지입주의무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해당지역 개별 기업가들의 요청 또는 해당지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의해 지정될 수 있도록 함 </div> </div>

현재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첫째, 물류기업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하여 당해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물류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및 제2조제5호 및 제6호), 둘째, 대규모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분양 비율 등에 의한 산업단지 지정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산업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탄력적으로 공급하려는 방안(제7조제3항 및 제4항 삭제, 안 제8조의2), 셋째, 개별공장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를 확대하고 기반시설 지원규정을 신설하려는 방안(안 제8조의3제1항 및 제5항)이 제시되어 있다.

(3)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확대시행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의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행 입지규제와 농도규제 중심의 규제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지나친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제약하고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폐수 등 오염물질의 농도중심 규제는 기업에서 배출농도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체별 오염부하량(=농도(C) x 폐수량(Q))의 총량이 과다하여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일부 수계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도 확대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 CWA)에 점오염원의 통제에도 수질목적에 초과한 유역에 대해서는 오염수역목록(impaired water

list)을 작성하여 오염총량제(Total Maximum Daily Loads, TMDL)를 명문화 하였으며, 수질개선 미흡과 시민환경단체의 45건에 달하는 소송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TMDL을 시행하도록 명령을 받아 1992년부터 의무화하였다.⁴⁴⁾ TMDL은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된 수계를 파악하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1일 최대 오염부하량을 조사하여 각 오염배출시설(공장 등)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할당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제1항 제1호),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제1항 제2호)이 그 대상지역이다. 다만, 4대강수계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강수계법 제3장에서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는 당초 의무제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임의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가 이에 해당한다. 동법은 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수질보전특별대책상 건축물 규모에 의한 입지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택지·관광단지 조성사업 규모 제한’ 등 행위제한 일부의 적용을 배제(한강수계법 제9조)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수처리장 건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제10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수계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의

44)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자료출처 : <http://tmdl.nier.go.kr/system/example.asp>

무화하여 확대·시행된다면 기존의 입지규제 및 행위제한에 대한 일부 적용이 배제되어 기업활동의 욕구와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침해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동시에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이라는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환경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08.10.30,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다른 수계(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와 같이 의무제로 전환하고자 한강수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09-51호)하였다. 입법예고안은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의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며(안 제8조),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안 제8조의2).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목표수질이 달성·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안 제8조의3),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과징금 처분, 허가의 제한, 불이행에 대한 제재(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8까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표 4-3>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확대시행을 위한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현행 입지규제와 농도규제 중심의 규제법제만으로는 한계 및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임의제 시행의 문제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총량관리제 확대시행에 관한 입법예고 - 환경부는 한강수계 오염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고자 한강수계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

(환경부공고 제2009-51호)

(4) 신중 오염원 및 유해물질들의 등장을 고려한 오염원관리체계의 개선

그 동안 상수원 관리, 오염원 배출기준의 강화, 정수시설 고도화 등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의 증가와 함께 1.4 다이옥산, 잔류 항생제 등을 비롯한 신중 유해물질들의 등장으로 우리의 먹는 물은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1,4 다이옥산 문제처럼 허용치 이하의 배출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기준치 이상의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중 유해물질들에 의한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법규상 사전규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오염원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먹는 물에 대한 수질보존을 보다 철저하게 하기위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제도의 도입, 둘째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의 연계방안이다.

먼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제도는 먹는 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방안은 이미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심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⁵⁾

45) 2009. 2. 24. 추미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표 4-4>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제도의 도입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p>현행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환경호르몬, 각종 신규 화학물질 등 수질기준이 없어 관리가 불가능</p>	<p>■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장 제1절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수원의 수질 오염이 먹는 물 수질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둘째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의 연계방안과 관련하여 폐수 배출총량제는 현행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관리가 불가능한 항목, 즉 환경호르몬, 각종 신규 화학물 등 수질기준이 없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입지규제 및 행위제한에 대한 일부 적용을 배제하되 자연보전권역내 수질보전을 위해서 일반폐수 외에 환경호르몬 또는 각종 신규 화학물질의 배출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총량관리제와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에 있다.

폐수배출총량제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폐수배출총량은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법의 사업장 오염부하량 할당에 이미 제도화 되어 있다. 즉,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질및수생태법, 하수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자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 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총량제는 이 조항을 활성화하여 적용하면 총량관리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하다.

기타 지역은 폐수배출총량제의 제도화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법률의 제정보다는 폐수배출총량제의 성격상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동법 제4조 제2항에 필요한 경우 폐수배출량을 확인하여 총폐수배출량을 할당받아 이를 오염총량과 같이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의 의미가 중요한 지역(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변구역 등), 수질기준으로 관리가 불가능한 항목(중금속, 유해물질, 환경호르몬, 각종 신규화학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 및 사업장 밀집지역 등 수계영향권별 폐수배출총량제를 시행할 필요가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폐수배출총량제의 시행을 규정한다. 그리고 동법 제4조 제1항의 예외규정 및 폐수배출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총폐수배출량의 할당, 총량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및 총량초과부과금의 부과, 해당지역 지원,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은 오염총량관리제의 규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규정의 내용을 폐수배출총량제규정에도 준용하도록 한다.

<표 4-5> 폐수배출총량제와 오염총량관리제의 연계를 위한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p>현행 오염총량관리제를 통해 환경호르몬, 각종 신규 화학물질 등 수질기준이 없어 관리가 불가능</p>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규정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정 - 동법 제4조 제2하에 필요한 경우 폐수배출량을 확인하여 총폐수배출량을 할당받아 이를 오염총량과 같이 관리하도록 규정 - 동법 제4조 제1항의 예외규정,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9 규정의 내용을 폐수배출총량제 규정에도 준용 </p>

2.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체계 개선안

(1) 주민공람 및 의견절차의 정비

우리나라에서 폐수발생원별 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동법은 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3장), 비점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4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제5장)을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폐수배출시설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산업폐수의 배출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오염원의 관리와 관련이 있다.

현행 인·허가 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허가 체계상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절차의 부재한 점, 배출사업자의 배출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계당국의 충분한 검토가 불가능한 점,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배출수 기준의 적용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폐수 배출수 기준에 관한 문제는 후술하는 <3. 폐수시설 배출기준 강화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인·허가 체계상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절차의 부재와 관련하여,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상 폐수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및 건강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행정정보에 관한 알 권리보장의 측면에서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절차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주민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을 근거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인·허가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주에 따라서 30일에서 60일간 공지를 하고, 의견을 접수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4조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는 “주민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폐수배출시설의 인·허가 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

계자들에게 공람 및 의견제출의 기간은 20일 이상(미국은 30일 이상이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법상 20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통일성을 위해서 20일 이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60일 미만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공람 및 의견제출 절차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진행의 지연을 유발하고, 관계 행정당국에는 업무량을 과중시키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허가신청 및 폐업신고가 빈번한 현실적 상황을 감안할 때 모든 폐수배출시설의 인·허가 시 지역주민에 대한 공람 및 의견제출 절차의 시행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되 일정기준(일일폐수배출량 기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등)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이 요구되는 사업장과 그렇지 않은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6> 인·허가 체계상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절차 부재의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p>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상 폐수배출시설의 인·허가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절차 규정의 부재</p>	<p> ■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의 신설 - 폐수배출시설의 인·허가시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 - 단, 일정기준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이 요구되는 사업장에만 적용 </p>

(2) 허가심사에 관한 법제 정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상 일반적인 허가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은 10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NPDES permit 신청에서 발행까지 시민 혹은 민간단체, 신청자에 의한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최소 5개월에서 8개월까지 소요가 된다. 따라서 전술한 내용 중 지역주민에 대한 공람 및 의견제출이 요구되는 사업장의 경우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소 2~3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표 4-7> 배출사업자의 배출허가 신청접수 후 처리기간의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배출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처리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충분한 검토가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 - 지역주민에 대한 공람 및 의견제출이 요구되는 사업장의 경우 처리기간을 최소 2~3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한편 배출허용기준은 미국과 같이 전반적인 요소의 고려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출허가 신청자 및 관계 행정당국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바, 배출허가 신청자가 배출허가 신청 시 국가에서 지정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회사(환경 컨설팅업체)의 기술자에 의해 배출허가 신청서가 작성되도록 명문화 하고 전문회사는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당

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배출허가의 경우 제33조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어 하천수질의 훼손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해당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역의 환경적 사정은 해당 지자체 및 유역관리청이 관련 정보에 능통하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배출허가권자에 환경부외에 지자체 및 유역관리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지자체 및 유역관리청은 신청서의 형식적·내용적 측면의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고 환경부는 지자체 및 유역관리청의 심사평가에 근거하여 최종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자체·유역환경청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있는 전문회사(환경 컨설팅업체)의 기술자에 의해 작성된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2항을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의 신설이 요구된다.

<표 4-8> 배출허가 신청서 작성 및 허가절차의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배출허가 신청자 및 관계 행정당국의 전문지식 미흡 및 지역환경청을 배제한 허가 또는 신고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p>■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제33조의 개정 및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유역환경청의 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개정 - 자격있는 전문회사의 기술자에 의해 배출허가 신청서가 작성되도록 조항 신설 </div> </div>

3. 폐수시설 배출기준 관련 개선안

(1)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배출수 기준의 적용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동 사안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개별 배출자의 배출수의 특성 및 배출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특성에 따라서 방류수 기준안 및 검사대상 방류수 수질 항목, 목표, 검사 주기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간접(indirect)배출을 제외한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수역의 전 구간에서 국가오염물질삭감시스템(NPDES)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2조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그 자세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동 규정에 따라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별(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특례지역⁴⁶⁾)·일일폐수배출량별(예. 1일 폐수배출

46) 동법 시행규칙 별표 13

1. 지역구분 적용에 대한 공통기준

가. 제2호 각 목 및 비교의 지역구분란의 청정지역, 가지역, 나지역 및 특례지역은 다음과 같다.

- 1) 청정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하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이라 한다) 매우 좋음(I a)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2) 가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좋음(I b), 약간 좋음(II)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3) 나지역 :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보통(III), 약간 나쁨(IV), 나쁨(V) 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 4) 특례지역 : 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공동처리구역으로 지정한

량 2,000m³이상/미만)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각 지역의 기준에 따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수질의 유지 및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지역별·일일폐수배출량별 구분에서 미국·일본·유럽과 같이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차등 적용, 직접 및 간접방류 배출허용기준을 구분·적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가 요구된다.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차등 적용의 진행절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및 지자체·유역환경청·환경부가 참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개정된 배출허용규정의 적용은 주요 상수원보호 수계를 중심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재 수질환경기준의 수질등급에 따라 청정, 가, 나, 특례 지역으로 구분 적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차등적용하나 실질적 기준치 차이는 크지 않고 본래의 물이용 목적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환경기준 1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수역(청정), 직접 수계로 폐수를 방류하는 모든 업소(직접방류), 하·폐수종말처리구역으로 폐수를 방류하는 모든 배출업소(간접방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경우 지자체·유역환경청은 폐수를 직접방류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폐수의 특성 및 배출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한도를 정하여 5년 이내에 갱신하도록 하고 간접방류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배

는 지역 및 시장·군수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공단지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청정지역으로 본다.

다.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 배출시설에 제2호에 따른 항목별 배출허용기준(같은 호 나목의 항목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 항목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이하생략)

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요구된다. 즉 동법 시행규칙 별표13에 시행시기를 달리 규정하여 1단계로 환경기준 1등급 수역 내에 직접방류 업소 중 일일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2단계로 환경기준 1등급 수역 내에 모든 직접방류 업소, 3단계로 환경기준 1등급 수역과 직접방류 업소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고, 간접방류의 경우 각 종말처리장별 별도의 배출허용규정을 정하도록 한다.

한편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 고려되는 평가방법으로 BAT는 ‘경제적으로 달성가능한 가장 유용한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BAT)’을, BPT는 ‘가장 실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폐수처리기술(Best Practical control Technology, BPT)’을 말하며 이 용어는 해당 기술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이 인정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아래 자연보전권역에 BAT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서 다루었다.

<표 4-9> 산업폐수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폐수배출사업장의 폐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배출수 기준 적용의 문제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p>■ 배출허용기준의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청정, 가, 나, 특례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청정, 직법방류, 간접방류로 개선 -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적용 </div> </div>

(2)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

현행 입지규제 중심의 정책은 상수원 관리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이 제한받고 있고 이에 따라 입지

규제 중심의 정책을 보완하고, 수질관리정책의 선진화 및 발전된 기술개발을 반영한 총량제, 배출규제 중심으로의 정책개선의 필요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등 상수원지역의 폐수 배출시설 입지완화에 따라 오염관리를 위해 배출기준의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방류시설의 도입·시행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은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을 명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선 무방류시스템의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11호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방류(放流)’란 ‘모아서 가두어 둔 물을 흘려보냄’이라는 의미를, ‘배출(排出)’이란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수질관련 분야에서는 방류와 배출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는 용어는 ‘폐수무방류시설’ 혹은 ‘폐수무배출시설’로 수정함이 옳다. 또한 무방류시스템은 무배출 청정공정(Zero Pollutants Clean Process), 폐수무배출시스템(Zero Liquid Discharge System), 무검출 처리시스템(Zero Pollutant Discharge Treatment System)으로 분류되며, 11호의 정의상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무배출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배출 청정공정과 무검출 처리시스템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법 제2조의 개정방안은 다음과 같다. 11호 “폐수무방류시설”이라 함은 유해물질 또는 독성물질을 수환경으로 배출하지 않는 산업시설 및 공정 시스템을 말하며 관리 수준에 따라 무배출 청정공정, 폐수무배출시설, 무검출 처리시설로 구분된다. 12호 “무배출 청정공정”이라 함은 공정자체에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

술로 특정의 유해물질의 발생을 방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13호 “폐수무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 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4호 “무검출 처리시설”이라 함은 폐수 중 특정 유해물질을 검출한계 이하로 처리하여 수환경으로 배출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33조는 제1항). 그리고 동조 제5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 곤란 등을 이유로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제6항에서 지역별 설치제한 범위 및 그 대상 시설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의 규정을 미루어 볼 때 인간의 건강 및 자연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우 폐수무방류시설 중 무배출 청정공정과 폐수무배출시설은 허용하되 무검출처리시스템은 실질적으로 그 의미상 ‘무방류’가 아닌 ‘방류 최소화’임을 미루어 볼 때 제7항의 설치가능 시설에서 제외시킴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폐수무방류시설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동법 전반에 걸쳐 관련 조항의 개정이 요구된다.

<표 4-10>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p>무방류시스템 정의 및 구분의 미흡 문제</p>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11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폐수무방류시설(또는 “폐수무배출시설”)”로 개정 - 제2조 11호 “폐수무방류시설”을 무배출 청정공정, 폐수무배출시설, 무검출처리시설로 구분 ■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11호의 개정에 따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조 12호 “무배출 청정공정”의 정의 - 제2조 13호 “폐수무배출시설”의 정의 - 제2조 14호 “무검출 처리시설”의 정의 ■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 제7항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검출처리시스템을 설치가능 시설에서 제외

(3) 자연보전권역에 BAT 도입


미국 EPA는 오염원 특성을 고려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업 폐수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배출시설별 폐수특성, 오염물질의 종류, 최적처리기술(BAT) 등에 근거한 차등적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출허용기준 설정 시 고려되는 평가방법으로 BAT는 ‘경제적으로 달성가능한 가장 유용한 기술(Best Available Technology economically achievable, BAT)’을 말하며 이 용어는 해당 기술에 대한 명확성이 결여되

어 법률에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해당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변성이 있으므로 신규 법을 제정하거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허가절차와 관련된 법 제33조의 1을 신설하여 BAT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즉 제1항으로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BAT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각호로 규정한다. 각호에는 1. 세부 업무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해당업종에 대한 기술근거와 기준개발을 위한 폐수특성, 폐수처리기술, 경제적 영향 등 관련 정보 관한 사항, 3. 대안기술에 대한 비용 및 처리효율에 관한 사항, 4. 도출결과를 바탕으로 개별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환경영향과 경제적 과급효과에 관한 사항, 5. 자연보전권역 배출허용기준시스템(KNPDES)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BAT기본계획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폐수배출 업종별 BAT 적용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표 4-11> BAT 국내 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p>BAT는 ‘경제적으로 달성가능한 가장 유용한 기술’로 명확성 결여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변성이 있음</p>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허가절차와 관련된 법 제33조의 1을 신설 - BAT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이 적절 </p>

4.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개선안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2조 8호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24종(47)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5조는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을 금지하고 있고, 제77조는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7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유해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해서 배출시설 입지규제를 할 경우 입지규제로 인한 산업활동의 제약이 예상된다. 따라서 독성이나 위해성 수준에 맞게 차별화해서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첫 번째로 기존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특정수질 유해물질, 일반수질유해물질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특정수질 유해물질, 일반수질유해물질, 일반수질오염물질로 삼원분류하는 방안, 두 번째로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배출시설의 입지규제를 해야 할 정도로 유해성과 노출가능성이 높은 물질들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현재와 같이 입지규제를 적용하고, 일반수질 유해물질은 유해성이 인정되나


47)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제4조 관련) 1.구리와 그 화합물 2.납과 그 화합물 3. 비소와 그 화합물 4.수은과 그 화합물 5.시안화합물 6.유기인 화합물 7.6가크롬 화합물 8.카드뮴과 그 화합물 9.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트리클로로에틸렌 11.페놀류 12.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13.셀레늄과 그 화합물 14.벤젠 15.사업화탄소 16.디클로로메탄 17.1,1-디클로로에틸렌 18.1,2-디클로로에탄 19.클로로폼 20.1,4-다이옥산 21.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22.염화비닐 23.아크릴로니트릴 24.브로모포름

입지규제를 할 정도로 높지 않은 물질들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무방류 시스템을 통한 관리로 이분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33조 제7항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9조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법 제33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 1-디클로로에틸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미 우리나라 법은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특정수질 유해물질, 일반수질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들을 입지규제 할 물질과 무방류 관리할 물질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한 입지허용에 관한 사항은 위의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개정보다는 현행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에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도 유해도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표 4-12> 특정수질유해물질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문 제 점	개 선 방 안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 및 입지규제로 인한 산업활동의 지장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상 기존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삼원분류 -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에 관한 심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

II. 권 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건설부 고시 제302호(‘91. 6.7)에 근거해 상수원상류 개별공장의 입지를 제한을 받게 된다. 이는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인데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을 정하는 전형적인 토지이용규제에 해당한다. 공장입지를 규제받는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저수지로부터 유하거리 5km이내인 지역 및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취수장으로부터 1km이내인 지역, 수질·대기오염이 우려되는 시설 등이다. 이와 같은 입지규제 중심의 정책은 상수원 관리에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입지규제 중심의 상수원 관리 치중에 따라 사유재산 침해 및 개발 욕구 제한 등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입지규제 정책을 보완함과 동시 총량제, 배출규제 개선 등 수질관리정책의 선진화가 요구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권역내에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별화한 기업 활동의 제한을 완화하고 자연보전권역은 필요한 경우 중첩규제(목적이 다른 중첩규제에 한함)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보전하되 규제의 허용은 자연보전권역을 지정한 목적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산업입지정책인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나 규제의 일관성, 관리의 용이성,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개별입지 집 단화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이 계획입지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 제공과 더불어 사회환경적·경제적·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는 등 관련 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의 효율적·과학적 관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현행 입지규제와 농도규제 중심의 규제법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지나친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제약하고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한 폐수 등 오염물질의 농도중심 규제는 기업에서 배출농도기준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체별 오염부하량(=농도(C) x 폐수량(Q))의 총량이 과다하여 수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일부 수계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계에도 확대 시행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넷째, 폐수배출총량은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대강법의 사업장 오염부하량 할당에 이미 제도화 되어 있다. 한강 지역은 폐수배출총량제의 제도화 및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법률의 제정보다는 폐수배출총량제의 성격상 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동법 제4조 제2항에 필요한 경우 폐수배출량을 확인하여 총 폐수배출량을 할당받아 이를 오염총량과 같이 관리하도록 규정한다.

다섯째,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체계 개선 방안으로 주민공람 및 의견절차의 법제를 정비하고,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 일반적인 허가신청의 경우 처리기간은 10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로 명시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에 대한 공람 및 의견제출이 요구되는 사업장의 경우 처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최소 2~3개월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여섯째, 산업폐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의 경우 지자체·유역환경청은 폐수를 직접방류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폐수의 특성 및 배출수가 유입되는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한도를 정하여 5년 이내에 갱

신하도록 하고 간접방류하는 사업체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요구된다.

일곱째, 무방류시스템의 국내 적용을 위한 법제 정비와 더불어 자연 보전권역에 BAT 도입을 위한 법개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이동우, 수도권 규제가 인구·산업의 공간적 재배치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국토연구원, 2008.
- 최윤철·홍완식,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5.
- 홍준형·최은진·김난영, 입법평가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6.
- 강현철, 평가방법론적 관점에서의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센터, 입법동향과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 강현철·차현숙,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법제연구원, 2008.
- 건설교통부, 지역·지구 등의 개념정립 및 유형화연구, 2006.
- 김대희외, 입법평가기준과 평가지침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2008.
- 김수용, 입법평가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2008.
-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처, 2002.
- 전병성,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현황아 개선방향, 환경부, 저스티스 통권 제74호, 2003.
- 조대현,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의 개선방안, 국회 법제실, 2007.
-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개선방안, 2008.
- 환경부, 상수원 상류지역 공장입지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2008.
- 자료출처 : <http://tmdl.nier.go.kr/system/example.asp>

부 록

부록 1 관련법조항

법 령	세 부 조 항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수도권정비계획법령</p>	<p>[수도권정비계획법]</p> <p>제 6 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p> <p>①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p>②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7 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p> <p>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제 8 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p> <p>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p>

법 령	세 부 조 항
	<p>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p> <p>제 9 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p> <p>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p>제10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p> <p>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2.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이하 “공공 청사”라 한다) 3.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수 시설(이하 “연수 시설”이라 한다) <p>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p> <p>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 령	세 부 조 항
	<p>교육 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수도권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원(각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p> <p>마.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이 3년인 간호전문대학을 대학 중 간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간호전문대학은 설립 후 10년이 지날 것 2) 변경하려는 간호대학의 총학생정원은 간호전문대학의 총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p>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p>2. 공공 청사의 경우</p> <p>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법 령	세 부 조 항
	<p>3) 공공법인의 사무소</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p> <p>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p> <p>제12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p> <p>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증설”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학교, 공공 청사 또는 연수 시설의 신설·증설을 말한다.</p> <p>1. 학교의 경우</p> <p>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입학 정원이 50명 이내인 대학(컴퓨터, 통신, 디자인, 영상,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 전문 분야의 대학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이 100명 이내인 대학을 말한다. 이하 “소규모대학”이라 한다)의 신설. 다만, 소규모대학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p> <p>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라. 수도권에서의 학교 이전</p> <p>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p>

법 령	세 부 조 항
	<p>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p> <p>2) 대학 본부가 수도권 밖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성장관리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p> <p>3)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p> <p>2. 공공 청사의 경우</p> <p>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성장관리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p> <p>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p> <p>3) 공공법인의 사무소</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p> <p>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p> <p>3. 연수 시설의 경우</p> <p>가. 연수 시설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나.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증축</p> <p>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연수 시설의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p> <p>②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p>

법 령	세 부 조 항
	<p>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계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뚜렷하게 낮은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지역 <p>제13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p> <p>①법 제9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결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하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용지조성사업 3.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조성사업 4.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사업 5.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종합개발사업 <p>②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 교 2. 공공 청사 3.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창고 시

법 령	세 부 조 항
	<p>설(『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만 해당한다)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제3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p> <p>4. 연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p> <p>③국토해양부장관은 연접개발의 세부적인 적용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등을 정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p> <p>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p> <p>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2.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p> <p>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고 주변 지역이 이미</p>

법 령	세 부 조 항
	<p>시가화(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p> <p>3)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4)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제외한다.</p> <p>1) 6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3)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p> <p>4)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거나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다.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p> <p>3.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p>

법 령	세 부 조 항
	<p>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4. 학교의 경우</p> <p>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p> <p>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p> <p>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p>5. 공공 청사의 경우</p> <p>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법 령	세 부 조 항
	<p>3) 공공법인의 사무소</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p> <p>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p> <p>6.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p> <p>7.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p> <p>②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산업 입지 및개 발에 관한 법령</p> <p>[산 업 입 지 및 개 발 에 관 한 법 률]</p>	<p>제 2 조 (정의)</p> <p>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p> <p>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p> <p>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단지</p> <p>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p> <p>라. 농공단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p>

법 령	세 부 조 항
	<p>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p> <p>7.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이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초지 및 시설물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산업단지의 지정</p> <p>제 6 조 (국가산업단지의 지정)</p> <p>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p> <p>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4.6,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p> <p>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4.6,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p> <p>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07.4.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법 령	세 부 조 항
	<p>5. 주요유치업종</p> <p>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p> <p>7. 재원조달계획</p> <p>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p> <p>9.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p> <p>⑥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4.6]</p> <p>[전문개정 1995.12.29]</p> <p>제 7 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p> <p>①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국토해양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개정 2008.12.26]</p> <p>③삭제 [2008.12.26]</p> <p>④삭제 [2008.12.26]</p> <p>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12.26]</p> <p>⑥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⑦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p>

법 령	세 부 조 항
	<p>[전문개정 2007.4.6]</p> <p>제 7 조의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p> <p>①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p> <p>②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p> <p>[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p> <p>⑤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관하여, 제7조제7항은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p> <p>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p> <p>[전문개정 2007.4.6]</p> <p>제 7 조의3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p> <p>『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택지개발예정지구(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 조성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시설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법 령	세 부 조 항
	<p>[본조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p> <p>제 7 조의4 (산업단지지정의 고시등)</p> <p>①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p> <p>②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안에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 그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개발계획에 포함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토지 등의 세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01.1.29, 2007.4.6]</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3에서 이동 [2007.4.6]]</p> <p>제 8 조 (농공단지의 지정)</p> <p>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1993.8.5]</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언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④ 삭제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p> <p>⑤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4.6,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p> <p>제 8 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p> <p>①준산업단지는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p>

법령	세부조항
	<p>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6.27]]</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장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p> <p>③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제5조,제7조 내지 제5조,제7조의4,제10조 내지 제13조,제16조,제18조,제18조의2,제19조의2 내지 제27조,제30조 내지 제33조,제36조 내지 제38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8조의2,제50조는 준산업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2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한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12.26, 2009.3.25] [[시행일 2009.6.27]]</p> <p>⑤면적·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하거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시행일 2009.6.27]]</p> <p>[본조신설 2007.4.6]</p>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0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등)</p> <p>①법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9.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일 것 2.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 6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부지 면적이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 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업체수가 5개 이상일 것 5.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공장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것

법 령	세 부 조 항
	<p>②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지역 안의 공장 현황 및 토지이용현황 2. 준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준산업단지의 지정목적 4. 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5. 사업시행방법 6. 주요유치업종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8. 재원조달계획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0. 준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11. 준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p>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령</p>	<p>[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p> <p>제 2 조 (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p>제 4 조 (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p> <p>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4대강수계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법 령	세 부 조 항
	<p>1.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p> <p>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지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다.</p> <p>[전문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p> <p>제15조 (배출 등의 금지)</p> <p>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p> <p>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p> <p>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p> <p>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p> <p>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p> <p>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등을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p>

법 령	세 부 조 항
	<p>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p> <p>제32조 (배출허용기준)</p> <p>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p> <p>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③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제37조·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p> <p>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p> <p>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p> <p>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p>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p>

법 령	세 부 조 항
	<p>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p> <p>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사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⑤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p>

법 령	세 부 조 항
	<p>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p> <p>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p>제77조 (벌칙)</p> <p>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78조 (벌칙)</p> <p>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시킨 자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8.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령	세 부 조 항
	<p>8의2.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9.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p> <p>10.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11.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자</p> <p>1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p> <p>13.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폐쇄명령을 위반한 자</p> <p>14.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p> <p>1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p>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p>제11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p> <p>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p> <p>1. 학교의 경우</p> <p>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대학원대학의 신설. 다만,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지역에 신설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p> <p>다.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학교 이전(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육여건의 개선 등 교육정책상 부득이하거나 도시 안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이하 “수도권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p> <p>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각 원(각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학 정원의 증원</p> <p>마. 전문대학 중 수업연한이 3년인 간호전문대학을 대학 중 간호대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p>

법 령	세 부 조 항
	<p>1) 간호전문대학은 설립 후 10년이 지날 것</p> <p>2) 변경하려는 간호대학의 총학생정원은 간호전문대학의 총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p> <p>3)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p> <p>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서울특별시 밖의 대학과 서울특별시 안의 전문대학 간 통·폐합은 제외한다)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p> <p>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p> <p>2) 대학 본부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p> <p>3) 대학의 교사(교사)와 교지(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p> <p>2. 공공 청사의 경우</p> <p>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p> <p>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p> <p>3) 공공법인의 사무소</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p> <p>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p>

법 령	세 부 조 항
	<p>용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p> <p>제14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완화)</p> <p>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허가등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 중 그 면적(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또는 관광지조성사업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이 조에서 “도시지역등”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3)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택지조성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

법 령	세 부 조 항
	<p>조에 따라 지정된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각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행되는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다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만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2)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3) 도시지역등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변 지역이 이미 시가화 등이 완료되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 4)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서 시행되거나 도시지역등과 도시지역등이 아닌 지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중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p>다. 관광지조성사업 중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4. 학교의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신설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나. 제24조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학교 입학 정원의 증원 다. 신설된 지 8년이 지나지 아니한 소규모대학 입학 정원의 증

법 령	세 부 조 항
	<p>원(최초 입학 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원만 해당하며, 신설된 후 8년 이내에는 나목에 따른 증원을 할 수 없다)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p> <p>라.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또는 소규모대학의 이전</p> <p>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하여 고시하는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 통·폐합기준에 따른 대학과 전문대학간 통·폐합으로 인한 대학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대학 및 전문대학이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요청한 것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2) 대학 본부가 자연보전권역 밖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자연보전권역에 신설되지 아니할 것 3) 대학의 교사(교사)와 교지(교지) 등이 종전과 같이 사용되고, 폐지되는 전문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은 대학의 교사와 교지 등으로 전환될 것 <p>5. 공공 청사의 경우</p> <p>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 다만, 2)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의 경우에는 증축이나 용도변경만 가능하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3)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이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소를 신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청은 제외한다)의 청사 2) 중앙행정기관 중 청의 청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청사(교육, 연수 또는 시험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3) 공공법인의 사무소 <p>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및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 중 관할 구역이 수도권과 그 인근의 도 지역만을 관할하는 기관 및 공공법인의 청사 또는 사무소의 신축, 증축 또는

법 령	세 부 조 항
	<p>용도변경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것</p> <p>6. 기존 연수 시설의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축</p> <p>7.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지역에서 시행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p> <p>②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때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여러 개의 택지조성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꺼번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p> <p>제16조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p> <p>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3조제4호다목의 복합 건축물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이란 제3조제4호의 업무용시설, 판매용시설 및 복합시설(이하 “업무용시설등”이라 한다)이 아닌 시설에서 업무용시설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p> <p>②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나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구성된 조합을 말한다.</p> <p>제17조 (과밀부담금의 감면)</p> <p>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3. 건축물 중 주차장, 주택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4. 건축물 중 수도권만을 관할하는 공공법인(지점을 포함한다)의 사무소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에 건축하는 연구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법령	세부조항																																																	
	<p>나. 『과학기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과학연구단지 다. 『나노기술과학촉진법』 제16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단지 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p> <p>6.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중심지에 건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p> <p>7. 건축물 중 부담금이 부과된 시설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p> <p>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면적에 대하여 각각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한다.</p> <p>가. 업무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 나. 판매용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다. 복합 건축물로서 부과대상 면적 중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건축물: 1만5천제곱미터 라. 다목 외의 복합 건축물: 2만5천제곱미터</p> <p>제18조 (부담금의 산정)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 2와 같다.</p> <p>별표2 부담금의산정방식[제18조관련]</p>																																																	
<p>[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	<p>제34조 (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p> <p>별표 13</p> <p>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 가. 생활하수처리시설,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p> <table border="1" data-bbox="422 1338 1163 1555"> <thead> <tr> <th>대상</th> <th colspan="3">1일 환수처리량 2만 세제곱미터 이상</th> <th colspan="3">1일 환수처리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th> </tr> <tr> <th>구분</th> <th>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th> <th>화학적 산소요구량</th> <th>부유물질량</th> <th>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th> <th>화학적 산소요구량</th> <th>부유물질량</th> </tr> <tr> <th>지역구분</th> <th>(mg/L)</th> <th>(mg/L)</th> <th>(mg/L)</th> <th>(mg/L)</th> <th>(mg/L)</th> <th>(mg/L)</th> </tr> </thead> <tbody> <tr> <td>상설지역</td> <td>30 이하</td> <td>40 이하</td> <td>30 이하</td> <td>40 이하</td> <td>50 이하</td> <td>40 이하</td> </tr> <tr> <td>거지역</td> <td>60 이하</td> <td>70 이하</td> <td>60 이하</td> <td>80 이하</td> <td>90 이하</td> <td>60 이하</td> </tr> <tr> <td>나지역</td> <td>90 이하</td> <td>90 이하</td> <td>80 이하</td> <td>120 이하</td> <td>130 이하</td> <td>120 이하</td> </tr> <tr> <td>특별지역</td> <td>30 이하</td> <td>40 이하</td> <td>30 이하</td> <td>30 이하</td> <td>40 이하</td> <td>30 이하</td> </tr> </tbody> </table> <p>비고 : 1.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 제29조에 따라 광중하수도면적상의 용가를 받아 환수할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환수배출시설 및 『하수도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수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산업집약 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를 따른 광인지역에서 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의2 및 별표 27 제2호의2(별표 20 제2호의2에 따른 용역상 세밀한도)에 따른 용역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별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p>	대상	1일 환수처리량 2만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환수처리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지역구분	(mg/L)	(mg/L)	(mg/L)	(mg/L)	(mg/L)	(mg/L)	상설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거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60 이하	나지역	9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별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대상	1일 환수처리량 2만 세제곱미터 이상			1일 환수처리량 2천 세제곱미터 미만																																														
구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지역구분	(mg/L)	(mg/L)	(mg/L)	(mg/L)	(mg/L)	(mg/L)																																												
상설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40 이하	50 이하	40 이하																																												
거지역	60 이하	70 이하	60 이하	80 이하	90 이하	60 이하																																												
나지역	90 이하	90 이하	80 이하	120 이하	130 이하	120 이하																																												
특별지역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30 이하	40 이하	30 이하																																												

법 령	세 부 조 항
	<p>제36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p> <p>(위쪽)</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처리기간: 10일(폐수무암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일) ※ 작성요령 1. 대표자란에는 법인의 경우 성명 대신 직함을 적어도 합니다. 2.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에는 사업장 내 폐수배출시설의 위치, 용수·폐수의 흐름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의 부착위치 및 종류를 표시하고, 폐수배출공명호출도에는 원료의 최초 투입부터 최종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전 공정에 대하여 원료·부원료·첨가물, 용수의 투입량과 폐수·폐기물 및 최종의 배출점(별비 시의 배출점은 제외합니다)을 나타내며 하여, 복수 또는 다수의 공정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나타내야 합니다. 3.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 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에는 가. 원료·부원료·첨가물의 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은 연간 및 연간 최대량·평균량을 적되, 다수의 폐수배출시설이 일련의 연속공정인 경우에는 각각의 시설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용수는 공급원(지하수·하천수 등)별 및 사용목적(공정용수·간접냉각수 등)별 일일 최대량·평균량을 적어야 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재용하는 용수의 수질 분석자료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물질 발생배출처에는 발생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도, 폐수량, 폐기물량에 대한 최대·평균 배출치 및 산출방법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명세서는 폐수처리계통도, 처리방법, 처리능력, 처리효율, 시설명칭 및 용량, 운전요령과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방법(폐물양입, 이용방법, 사업장 안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는 방법)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도면에는 방지시설업종·특성상 및 설계자, 최종 방류수량 및 방류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해당 사업장으로 한정합니다), 최종방류구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5. 폐수무암류배출시설의 세부 설치기준 이행계획서에는 처리수의 재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고, 재이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의 부착 위치가 표시되어야 합니다.</p> </div> <p>제39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7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리 및 그 화합물 2. 디클로로메탄 3. 1, 1-디클로로에틸렌

부록 2 관련입법조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12
----------	------

발의연월일 : 2009. 2. 24.

발 의 자 : 추미애·김희철·강창일
이한성·유원일·최문순
조원진·홍재형·김성곤
김효석·김재윤·유선호
권선택·유성엽·배영식
주성영 의원(16인)

제 안 이 유

그 동안 상수원 관리, 오염원 배출기준의 강화, 정수시설 고도화 등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수립·시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원의 증가와 함께 1,4 다이옥산, 잔류 항생제 등을 비롯한 신종 유해물질들의 등장으로 우리의 먹는 물은 심각한 위협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1,4 다이옥산 문제처럼 허용치 이하의 배출에도 불구하고 먹는 물 기준치 이상의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신종 유해물질들에 의한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법규상 사전규제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오염원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먹는 물에 대한 수질보존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먹는 물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먹는 물의 수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오염원에 대하여 오염물질 배출금지 등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상수원의 수질 오염이 먹는 물 수질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7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6.(생 략)</p> <p><u><신 설></u></p> <p>7. ~ 15.(생 략)</p>	<p>제21조의3(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조치) ①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수질오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1. 상수원의 수질 오염이 먹는 물 수질 관리 기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p> <p>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②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78조(벌칙) ----- -----.</p> <p>1. ~ 6.(현행과 같음)</p> <p>6의2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를 위반한 자</p> <p>7. ~ 15.(생 략)</p>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9
----------	------

발의연월일 : 2008. 12. 3.

발 의 자 : 이재선 · 임영호 · 김창수
이용희 · 류근찬 · 권선택
변웅진 · 홍재형 · 김용구
김낙성 · 박상돈 · 이명수
심대평 · 이영애 · 이진삼
이상민 · 박선영 · 이시중
이회창 의원(19인)

제 안 이 유

수도권은 전국의 인구와 경제적 측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목표인구의 설정과 그 계획에 적합한 관리가 필요하며, 공업지역·대학신설 등 대규모 인구유발시설의 허용은 과밀비용과 지방의 황폐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

특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별로 구체적인 인구 및 산업배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적 동의 아래 장기적인 국토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함.

하지만, 현행법에서 시행령으로 각종 권역의 행위제한 제외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수도권 관리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과밀화를

부 록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많음.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등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그 발전 방향을 확립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별표에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나.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 다.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법률 제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6 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생 략)</p> <p>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 7 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생 략)</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u></p> <p>1. (생 략)</p> <p>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u>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p> <p>제 8 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생 략)</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u></p>	<p>제 6 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와 같다.</u></p> <p>제 7 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다음---</u></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단서 삭제></u></p> <p>제 8 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u>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 9 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 략)</p> <p>제18조(총량규제) ① (생 략)</p> <p>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③ · ④ (생 략)</p>	<p>제 9 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 ----- ----- ----- -----<u>수도권정비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은</u> <u>경우--.</u></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총량규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별 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6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 공사 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에 한한다)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송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테리·내강리에 한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p>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지역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19
----------	------

발의연월일 : 2008. 2. 25.

발 의 자 : 안상수 · 이한성 · 문학진
주광덕 · 이인기 · 박기춘
나성린 · 김성수 · 신상진
임동규 · 강석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정부는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하면서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이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지역을 지정하였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과밀지역인 서울시 이외에 주변지역까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한 취지는 이 지역이 장래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인데, 이는 당시의 규제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서울시와 접경지역인 안양, 광명, 과천 등 10개 시·군지역 도시의 연담화(평면적 확산)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82.12.31) 제정이전보다 10여년 앞선 1971. 7.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2001. 1.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보다는 획일적인 행정 편의적 규제로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오히려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임.

특히,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기초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만으로도 모든 개발이 강력히 제한되고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존치시키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라고 판단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를 넘는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하남시, 의왕시, 과천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등 경기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인구나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부 록

법률 제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를 “집중되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을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6 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p>1. 과밀억제권역: 인구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단서 신설></p> <p>2. 3. (생략) ② (생략)</p>	<p>제 6 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 -----.</p> <p>1. -----집중되어 ----- -----<u>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50% 이상인 지역을 제외한다.</u></p> <p>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시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63
----------	------

발의연월일 : 2008. 12. 23.

발 의 자 : 이시중·이용섭·김성곤
강창일·양승조·홍재형
변재일·김종률·김재균
최규성·박상돈·이재선 의원
(12인)

제 안 이 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음. 그 결과 1980년에 35.5%이던 수도권 인구비중이 2007년에는 48.9%로 늘었고, 수도권 과밀은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지출과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음. 반면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저비용의 여건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런 여건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효율성을 상실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하고 있음.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방안이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내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방이전 기업들이 이전 계획을 취소하거나 유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지방경제가 고사하며 수도권 난개발과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수도권 규제가 차질없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수도권 규제 관련 주요 조문들을 법률에 규정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내용

- 가.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3호).
- 나. 대규모개발사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4호).
- 다.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4조제1항제3호와 제9호의 일부”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4조제2항).
- 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을 별표에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 마.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
- 바.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부 록

사. 수도권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 19조).

법률 제 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을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록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 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단서 신설></p> <p>4. “대규모개발사업”이란 택지,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단서 신설></p> <p>5. (생 략)</p> <p>제 4 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생 략)</p> <p>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결정된 수도권정</p>	<p>제 2 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p> <p>4. ----- ----- ----- -- 다만,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제 4 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p>

현 행	개 정 안
<p>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u>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 6 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생 략)</p> <p>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 7 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생 략)</p> <p>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다음 각 호의 행위나 허가등을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u>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u></p> <p>제 8 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생 략)</p>	<p><u>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6 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별표와 같다.</u></p> <p>제 7 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단서 삭제></u></p> <p>제 8 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 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u></p> <p>제 9 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2. (생 략)</p> <p>제18조(총량규제) ① (생 략)</p> <p>② <u>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u></p> <p>③ · ④ (생 략)</p> <p>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p> <p>①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대규모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p> <p>② · ③ (생 략)</p>	<p>② <u>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성장관리 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p>제 9 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 ----- ----- ----- -----<u>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u>-----.</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8조(총량규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u></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p> <p>① ----- ----- -----<u>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u>-----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별 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6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과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접읍, 오남읍에 한한다)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북동, 남사면, 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에 한한다)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가현동·명륜동·송인동·봉남동·구포동·동본동·영동·봉산동·성남동·창전동·낙원동·옥천동·현수동·발화동·옥산동·석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율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문촌리에 한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울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p>동·서인동·인지동·아양동·신흥동·도기동·계동·중리동·사곡동·금석동·당왕동·신모산동·신소현동·신건지동·금산동·연지동·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에 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용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노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치지역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